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52-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752-01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10.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 선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 현 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현 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변호사)
정 지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변호사)
연구보조원 : 이 승 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조사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1. 연구 개요

□ 목적

- 이 연구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입법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함.

□ 내용

-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관련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정리
-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관련 판례 분석
-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관련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방법

- 문헌연구 :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법제 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관련 법원의 판례 분석
- 관련 판례 분석 : 법원도서관 유료 판례 검색 사이트와 로앤비 사이트에 ‘체육교사’, ‘코치’, ‘감독’, ‘선수 성폭행’은 물론 ‘선수’, ‘훈련’, ‘강간’, ‘폭행’, ‘추행’, ‘희롱’, ‘합숙’, ‘기숙사’, ‘상해’,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검색한 총 173건의 판례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판례분석의 방향과 입법과제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 연구 결과

가.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

□ 성폭력 실태

- 학교체육의 높은 비율

- 성폭력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에서 29건, 학교체육에서 43건, 전문체육에서 7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

○ 생활체육 중 태권도 성폭력 사건의 높은 발생 비율

- 생활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29건 중 26건은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하였음.

○ 피해 드러내기가 더 어려운 전문체육분야 성폭력

- 전문체육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건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사건 수가 적었음. 전문체육의 경우 취업알선과 성적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대해 저항하지 못한다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건이 적은 것으로 보임.

○ 체육 수업 중에 발생하는 성추행의 높은 발생 비율

- 학교체육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다양한 종목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체육수업, 축구, 농구, 육상, 야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체육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정규 수업 과정에서 성추행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줌.

○ 성폭력 피해 장소는 합숙소와 체육시설

- 스포츠 성폭력 사건의 주요 피해 장소는 합숙소(52건)와 체육시설(84건)이었음. 차량 안도 21건이었음. 합숙소는 합숙시설, 호텔, 모텔, 코치나 감독의 주거지, 학생의 주거지, 캠프 주차장 등이 포함됨. 체육시설은 체육관을 비롯하여 탈의실, 탁구장, 강당, 운동장, 체육관 사무실, 코치실, 체육준비실, 옥상 등 포함. 기타로 노래방, 등산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음.

○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와 선배에 의한 성폭력의 잔인한 양상

- 가해자는 크게 교사적 지위와 선배로 분류되고, 교사적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77건). 감독, 코치, 학교교사, 태권도 관장이나 사범, 합기도장 관장 등의 사설학원 관리자, 골프강사, 수영강사 등이 가해자로 드러났음.

- 선배에 의한 성폭력(6건)은 훈련뿐만 아니라 합숙에 있어서도 더 긴밀하게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독, 코치, 강사, 교사보다 더 심각한 양상의 성폭력의 형태를 띠기도 함.

○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높은 비율

-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87건 중 82건이 미성년자가 피해자임. 성폭력 유형(중복)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비율이 높음.

□ 관례 분석

○ 직업적 진로를 이용한 성폭력의 횡행

- 전문체육의 경우 교육자의 지위가 직업적 진로와 결부되어 성적, 진학, 취업, 시합 출전 기회 부여, 국가대표 선정 영향력 등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선수들이 가해자의 성적 요구나 성적 침해에 대해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쉽고, 침해의 정도 또한 클 수밖에 없음.

○ 성폭력의 정도가 심한 전문체육

- 전문체육은 합숙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생활을 공유하고 일상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서 성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남. 전문체육의 경우 탈의와 샤워 등을 체육관에 설치된 샤워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도와 빈도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움. 또한 시합 성적이 좋지 않거나 연습을 게을리 했다거나 연습을 잘하지 못했다는 등 신체접촉, 성폭력의 핑계가 더 다양한 측면이 있음.

○ 정서발달을 크게 해치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에서의 성폭력

-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의 경우 전문체육에 비해 정서적 발달이 중시되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교사가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그루밍을 동반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

○ 태권도 관장이나 사범에 의한 아동 성폭력

- 판례분석결과 태권도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생활체육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남. 일상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만큼 성폭력의 정도가 더 심각하게 드러남. 태권도 관장이나 태권도 사범에 의해 태권도장에서, 또는 아동이나 학생을 집에 바래다주는 셔틀버스 등의 차량에서 일어나고 있었음.

○ 15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피해자가 15년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성폭력은 피해자의 나이가 10세에서 11세인 경우에 가해졌으나 고소가 15년 후에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 양형 분석

○ 적극적인 특별양형가중요소의 판단 필요성

- 판례 분석 결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폭력은 교사적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들은 보호자나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특히 전문체육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학과 진로에 관한 생사여탈권을 무기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양형사유에 반영하여야 함.

○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사유

- 스포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 성폭력 피해 그 자체를 넘어, 스포츠 분야에서 자신의 직업과 꿈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특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하여야 함.
- 스포츠는 그 특성상 지도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정서적인 위계 관계가 형성되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이 전형적인 특성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이 피고인과 사귀었다는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도 있었음.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다거나 정식으로 사귀었다는 상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데 신중

할 필요가 있음.

-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동성이 함께 운동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성폭력이 동성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법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를 양형 사유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성이라는 이유로 그 피해를 경미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2차 피해와 관련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스포츠 종사자들의 선수 생활에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개입, 은폐, 진술, 증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함.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고 개입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양형 사유로 판단하여야 함.
- 피고인이 자신의 감형을 위해 주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의 한 측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고립시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성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주변인들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도 처벌불원은 대표적인 감경사유인데, 스포츠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개인과 관련된 양형요소

- 법원은 피고인의 재직 중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이로 인해 퇴직 이후에 겪게 되는 연금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거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는 형을 선고하기도 함.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욕구나 만족을 위하여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상당금액 공탁”의 의미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인데, 이러한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 공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에 부합한 처벌

- 스포츠 성폭력은 특히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생활, 선수생활 뿐 아니라 직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고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함. 또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 다시 가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스포츠를 하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심각한 범죄임. 따라서 이러한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는 판결들이 있음. 스포츠 성폭력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벌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미약한 처벌이 아닌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

○ 항소심 감형 지양

- 법원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되,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대하게 항소심에서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스포츠 성폭력 판결 중에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감형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스포츠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바람직하지 않아 지양함이 타당함.

나.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 분석

□ 폭력 실태

○ 학교체육에서 높은 발생률

- 스포츠 폭력에 대한 판례 43건 중 세부내용이 불상인 1건을 제외한 42건 중 생활

체육은 8건, 학교체육은 27건, 전문체육은 7건임. 성폭력 사건과 같이 학교체육, 즉 학교운동부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음.

○ 훈련 중 피해 발생

- 스포츠 폭력의 경우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에서 훈련 중 기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

- 분석 대상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위는 '교육자'인 성인이 가장 많은 데 반해, 피해자는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남. 이는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수직적 위계 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

- 스포츠 분야의 폭력 사건은 훈련 및 합숙 과정에서 단체 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사건별 피해자 수는 다수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분석 대상 사건들의 피해자 수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복수(2명 이상)인 사건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폭행에서 공동상해까지 피해 유형의 다양화

-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폭행으로 14건이었음. 상해(8건), 특수상해(7건), 특수폭행(4건), 집단폭행(3건), 강요(3건) 순이다. 폭행 중 특수폭행은 4건, 상해 중 특수상해는 7건이었음.

○ 도구를 이용한 폭행

- 폭행 도구에 따라 사건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체를 이용한 폭행보다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를 이용한 폭행 중에서는 운동 도구가 아닌 기타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상습적 폭행

- 폭행 횟수에 따라 분석 대상 사건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1회 폭행한 사건은 전체의

약 7%에 불과하여, 특정인에 대한 폭행이 장기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판례 분석

○ 전지훈련장에서 감독에 의한 폭력

- 전지훈련 연습장에서 시합에서 진 후 피해자가 다른 선수의 탓을 하며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눈 부위를 맞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적응장애로 정신과적 치료유지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도록 하였음.

○ 코치 등에 의한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 판례는 태권도부 코치가 정신봉이라는 이름으로 성기 등을 구타에 사용하여 출혈과 명자국이 남은 상해사건에서의 길이 50~60cm의 몽둥이 등 70cm의 몽둥이, 길이 60~70cm, 굵기 및 지름 3~4cm의 나무몽둥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또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감독이 골프훈련장에서 골프 훈련생을 1m의 골프채로 150회 구타한 경우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음.

○ 폭력의 상습성

-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함.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 판례는 태권도 관장이 9세 아동을 발로 차 심하게 구타한 행위, 코치가 빗자루 혹은 나뭇가지로 훈련 중인 16세 여아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았고, 휴대폰 모서리로 정수리를 폭행한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있음.

□ 양형 분석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어려움 고려

-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중상해의 결과를 가져오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도 하며, 결국 피해자에게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되는 피해를 가져오기도 함. 스포츠 분야의 폭력의 경우에는 단순한 폭행/상해를 넘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피고의 장래성 유리한 양형 사유 고려 지양

- 법원은 스포츠 폭력 발생 시 피고인의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위, 가능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 가해자가 그 스포츠 분야에서 이룩한 기존의 업적에 따라 그 양형이 달리 정해지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양형 사유 고려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신체적 접촉이라는 훈련과정의 특성 고려 신중

-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연습 등에서 신체적 접촉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도 함. 하지만 스포츠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수반된다고 하여 그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완화된다면, 앞으로도 스포츠 분야의 폭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스포츠 분야의 폭력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매우 중요함. 그런데 스포츠 분야에서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또는 주위의 상황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 관련 판례 분석

□ 민사판결

○ 피고(책임자)의 범위

- 피해자인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접 상대방인 가해자 외에도 학교인 경우는 교장, 지방자치단체,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이는 스포츠 분야의 합숙 훈련 등 발생 장소 등에 대한 학교의 설치·경영자에게 가해자인 교사의 사용자로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결국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방지의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장, 지방자치단체,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책임자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책임의 제한

- 판례는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민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훈련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은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학생의 사리분별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또한 훈련 참여가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제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짐.

□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등으로 가해자에게 해임 등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11건 중 3건이 인용됨. 원고가 폭력,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적절한 지도 감독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됨.
- 법원은 실제적 하자의 경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중대한 실제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음.
- 절차적 하자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 진다면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등을 이유로 해임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하여

피해자가 다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함.

3. 정책 제언 : 법제도적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 전반의 입법론적 체계 재구성

-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의사가 제압될 필요가 없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가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을 때 의사가 이미 제압된 상태로 보고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량으로 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징역 2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량으로 함. 그러나 형법 체계상 강제추행이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더 중한 범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행의 수단이나 정도에 있어 체계론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함께 판례의 균형 또한 필요함.

□ 의제강간연령 상향 검토

-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의제강간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구의 판례 분석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위계적이고 도제적인 환경에서는 폭행, 협박이 아닌 수단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관계에 있는 스포츠 분야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등이 발생하면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는 1차적으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함. 피해자가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드러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신고·상담 시스템을 대체하는 효과적 신고, 접수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서 성폭력/폭력 사건의 접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사설 체육학원 규제 강화

-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 체육학원에서는 아동·학생들이 성폭력/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음.
- 따라서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신고하게 하여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동법에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포함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폭력/폭력 방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예방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스포츠기본법’ 제정

-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 사건은 가해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를 엄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성폭력/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은폐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서는 ‘스포츠 고유의 가치’와 ‘생활체육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한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책 등을 명문화해야 함. 또한 스포츠기본법에는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 시책(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 특히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조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편제하여 상담에서 사건처리, 재발 방지 조치까지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엄격한 양형조사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서 제시되는 개별적인 양형요소의 적정성과 반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판례 분석 결과, 동성 간의 성폭력이라는 점, 피고인의 퇴직 후 연금 수령에 대한 고려 등은 적절한 양형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스포츠 분야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당사자만의 문제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종목 특성상 진실한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법원에 제출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진실한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5
나. 연구방법	6
II.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관례 분석	7
1.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관례 분석	9
가.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관례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9
나.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관례 분석	51
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양형 분석	62
2.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관례 분석	93
가.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관례를 통해 본 폭력 실태	93
나.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관례 분석	64
다.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양형 분석	65
3. 기타 관련 관례 분석	3
가. 민사판결	3
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8
III.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63
1. 성폭력범죄 전반의 입법론적 체계 재구성	56
2. 의제강간연령 상향 검토	5
3.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76
4. 사설 체육학원 규제 강화	7
5. ‘스포츠기본법’ 제정	8
6.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엄격한 양형조사	07

■ 참고문헌	73
■ 부 록	75
<부록 1> 스포츠 관련 정의 및 지도자 자격 조건 등 법제 현황	77
<부록 2> 스포츠 분야 성폭력 금지 관련 법제 현황	9
<부록 3> 스포츠 분야 폭력 금지 관련 법제 현황	21
<부록 4>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71
<부록 5>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	81

표 목 차

<표 I-1>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유경험 응답자 현황	3
<표 II-1> 체육목적별 성폭력 사건 수	9
<표 II-2>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0· 1
<표 II-3> 전문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1· 1
<표 II-4> 학교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2· 1
<표 II-5> 스포츠 성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2· 1
<표 II-6> 스포츠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4· 1
<표 II-7> 체육 목적별 폭력 사건 수	0· 4
<표 II-8> 전문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수	0· 4
<표 II-9>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수	0· 4
<표 II-10> 학교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수	1· 4
<표 II-11> 스포츠 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2· 4
<표 II-12> 스포츠 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3· 4
<표 II-13>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자 수	4· 4
<표 II-14>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의 폭행 횟수	6· 4
<표 III-1> 외국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6· 6

그림 목 차

[그림 II-1]	체육 목적별 성폭력 사건 비율	0· 1
[그림 II-2]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발생 비율	1· 1
[그림 II-3]	스포츠 성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3· 1
[그림 II-4]	스포츠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4· 1
[그림 II-5]	스포츠 성폭력 사건 피해 유형(중복)	5· 1
[그림 II-6]	체육 목적별 폭력 사건 비율	0· 4
[그림 II-7]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발생 비율	1· 4
[그림 II-8]	스포츠 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2· 4
[그림 II-9]	스포츠 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3· 4
[그림 II-10]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자 수	4· 4
[그림 II-11]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 유형(중복)	5· 4
[그림 II-12]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의 폭행 도구(중복)	5· 4
[그림 II-13]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의 폭행 횟수	6· 4

부 표 목 차

<부표 1>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일반적 사항	701
<부표 2>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 유형	511
<부표 3>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가해 행태 및 양형 관련	621
<부표 4>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일반적 사항	341
<부표 5>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피해 유형	941
<부표 6>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가해 행태 및 양형 관련	45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른바 “조재범 사건”은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 성폭력/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의 정형성, 즉 그 일상성과 불평등한 권력 구조와 위계적인 문화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선수 1,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78.8%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5%의 학생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5%의 학생은 매일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주 행위자는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이고 폭력이 발생하는 주 장소는 훈련 장소였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이러한 성폭력에는 언어적 희롱부터 강간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전체 58.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강제추행으로 25.4%를 차지했다. 강간 및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도 각각 1.0%와 1.5%로 나타났고, 이러한 피해율은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가 매우 일상적일 뿐 아니라 그 정도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 행위자는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만 아니라 선후배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장소는 주로 합숙장소나 기숙사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학생선수가 있는 전국 5,274개교 초중고 선수 63,211명(응답 57,5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선수들의 피해 경험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 -1>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유경험 응답자 현황

학교 급별	응답자수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초	18,007	3,423(19.0)	2,320(12.9)	438(2.4)
중	21,952	3,039(13.8)	3,288(15.0)	1,071(4.9)
고	17,598	2,573(14.6)	2,832(16.1)	703(4.0)
계	57,557	9,035(15.7)	8,440(14.7)	2,212(3.8)

초등학교 선수의 경우 폭언 및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은 3,423명(19.0%)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 경험자의 69.0%는 지도자(코치, 감독)를 주요 가해자로 응답하였다. 신체폭력 경험자는 2,320명(12.9%)이며, 가해자는 지도자(75.5%), 선배선수(15.5%)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종목은 빙상(84명, 26.2%), 수영(310명, 24.1%), 태권도(208명, 20.1%), 야구/소프트볼(415명, 19.4%), 체조(64명, 18.5%) 등의 순으로 신체폭력 피해가 보고되었다.

초등학교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는 전체의 438명(2.4%)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선수의 경우는 폭언 및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의 경우 3,039명(13.8%)이 경험한 것으로 답했으며, 주요 가해자는 선배선수나 또래선수(50.5%), 지도자(43.8%) 등이다. 신체폭력 경험자는 중복응답 포함 5,102명(2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 42건,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 131건,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 45건, ‘누군가 나의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 76건, 성관계 요구 9건, 강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주로 동성의 선배 및 또래이며, 장소는 과거 훈련장이 많았으나 점차 속소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선수의 경우, 폭언 및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의 경우 2,573명(14.6%)이 경험했으며,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56.0%), 선배선수나 또래선수(39.8%) 등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 경험자는 중복응답 포함 4,584명(23.7%)에 이른다. 고등학생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 22건,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 75건,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 18건, ‘누군가 나의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 61건, 성관계 요구 9건, 강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 동성의 선배 및 또래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 피해 장소는 과거 훈련장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숙소 등 비공개 장소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¹⁾

스포츠와 관련된 성폭력/폭력 사건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몸을 매개로 한 교육에 있어 신체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1.7.),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초중고 63,211명 전수 조사 결과발표 -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3배 이상 많고, 성관계 요구·강간 피해도 24건 - 스포츠 분야 (성)폭력 관례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 성폭력·폭력 사건 모두 태권도가 최다 -

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교육생들에게 성폭력/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입법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효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판례는 법원이 현행법을 해석·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한 사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계 성폭력/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현행법의 틀 내에서 법리와 내용을 해석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는 사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실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폭력 실태를 토대로 입법적 정비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관련 판례 분석
 - 괴롭힘을 포함하여 형사법적으로 성폭력 또는 폭력으로 처벌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성폭력/폭력에 관한 130건의 판례를 수집하여 스포츠 성폭력과 폭력의 양상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관련 입법과제 및 실효적인 구제 방안
 - 판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관련법의 입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와 실효적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법제 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관련 법원의 판례를 분석한다.

2) 관련 판례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한 판례는 법원도서관 유료 판례 검색 사이트와 로앤비 사이트에 ‘체육교사’, ‘코치’, ‘감독’, ‘선수 성폭행’은 물론 ‘선수’, ‘훈련’, ‘강간’, ‘폭행’, ‘추행’, ‘희롱’, ‘합숙’, ‘기숙사’, ‘상해’,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검색한 총 173건의 판례이다. 기간은 1997년~2019.9.까지의 판례로 법원도서관은 유료검색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이다.

형사사건은 성폭력사건 87건, 폭력사건 43건으로 총 130건이고, 민사, 행정사건은 총 43건이다.

3) 전문가 자문회의

판례분석의 방향과 입법과제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II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 분석

1.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	9
2.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 분석	93
3. 기타 관련 판례 분석	5

1.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

가.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체육은 크게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의미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내 운동부를 말하고(「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1) 학교체육에서 높은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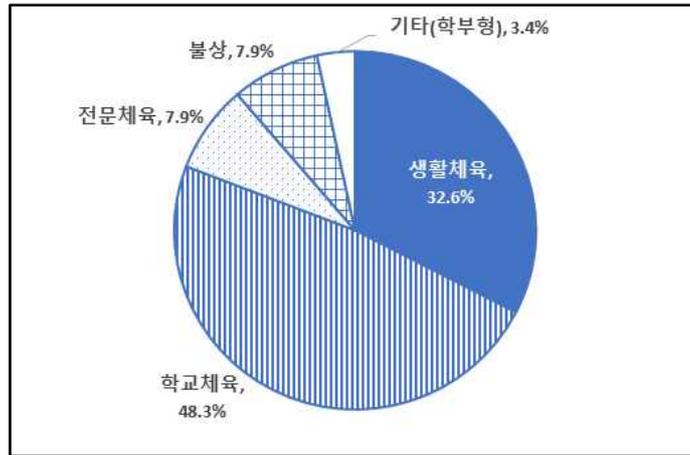
성폭력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에서 29건, 학교체육에서 43건, 전문체육에서 7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교체육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피해자의 대다수가 미성년의 학생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표 II-1> 체육목적별 성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체육목적	생활체육	학교체육 (수업, 유치원, 학교운동부 포함)	전문체육	불상	기타 (학부형)	합계
사건 수	29	43	7	7	3	89*

주 : * 피해자가 학부형+학생인 경우가 2건.



주: * 피해자가 학부형+학생인 경우가 2건

[그림 II-1] 체육 목적별 성폭력 사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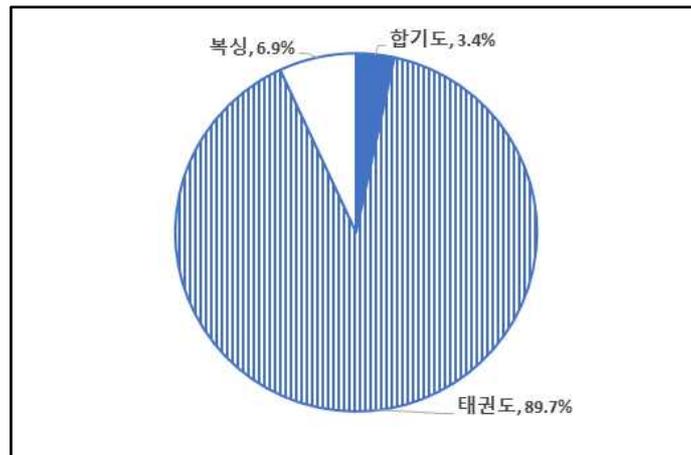
2) 생활체육 중 태권도 성폭력 사건의 높은 발생 비율

생활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29건 중 26건은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하였다. 태권도는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편화되어있고,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 학생까지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태권도 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많다는 것은 생활체육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II-2>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합기도	태권도	복싱
사건수	1	26	2



[그림 II-2]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발생 비율

3) 피해 드러내기가 더 어려운 전문체육분야 성폭력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고,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전문체육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건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사건 수가 적었다. 전문체육의 경우 취업알선과 성적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대해 저항하지 못한다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건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3> 전문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골프	역도	유도	쇼트트랙	양궁
사건수	3	1	1	1	1

4) 체육 수업 중에 발생하는 성추행의 높은 발생 비율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하고, 학교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선수를 말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학교체육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다양한 종목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체육수업, 축구, 농구, 육상, 야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체육수업 시간 중에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는 것은 정규 수업과정에서 성추행이 발생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 II-4> 학교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골프	농구	럭비	무용	배구	양궁	역도	유도	축구	테니스
사건수	1	6	1	1	2	1	1	2	5	1
종목	육상	정구	체육수업	배드민턴	스태킹	싸이클	씨름	야구	탁구	
사건수	4	1	8	2	1	1	1	3	1	

5) 주요 피해 장소는 합숙소와 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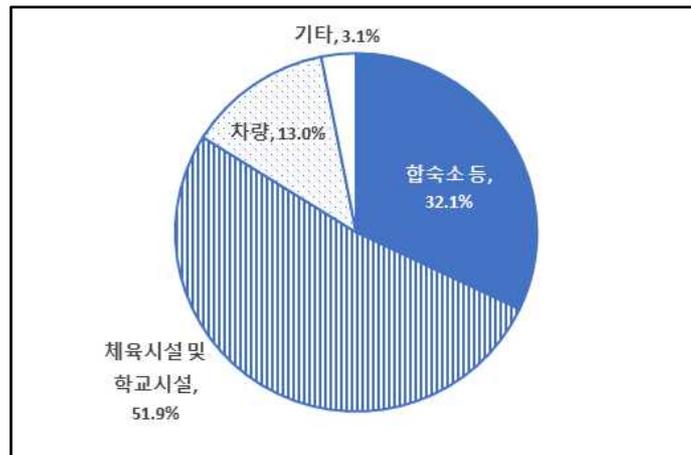
스포츠 성폭력 사건의 주요 피해 장소는 합숙소(52건)와 체육시설(84건)이었다. 차량 안도 21건이었다. 합숙소는 합숙시설, 호텔, 모텔, 코치나 감독의 주거지, 학생의 주거지, 캠프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체육관을 비롯하여 탈의실, 탁구장, 강당, 운동장, 체육관 사무실, 코치실, 체육준비실, 옥상 등도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기타로 노래방, 등산로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표 II-5> 스포츠 성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단위 : 건)

피해장소	합숙소 등	체육시설 및 학교시설	차량	기타*
사건수	52	84	21	5

주 : * 통신매체, 노래방, 등산로 등



주 : 기타는 통신매체, 노래방, 등산로 등

[그림 II-3] 스포츠 성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6)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와 선배에 의한 성폭력의 잔인한 양상

가)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

가해자는 크게 교사적 지위와 선배로 분류되고, 교사적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77건). 감독, 코치, 학교교사, 태권도 관장이나 사범, 합기도장 관장 등의 사설학원 관리자, 골프강사, 수영강사 등이 가해자로 드러났다.

간음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에 이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코치, 교사, 강사의 지위는 대개는 업무상 위력을 구성한다. 청소년 국가대표 출전 여부를 빌미로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사례가 있다.²⁾ 또 12세의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상담한 후 프로축구팀에 진학하도록 도와주고 매달 용돈을 5만 원씩 주는 그루밍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강간한 판례도 있다.³⁾ 이러한 위력적 지위는 대학 농구부 감독의 농구부 학생 어머니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⁴⁾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합숙 등 생활을 공유하고 있어 지배종속의 정도가 심할수록 성폭력의 정도 또한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스포츠 성폭력 판례는 대체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드물게는 태권도 관장이

2) 대구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고합238, 2017초기938(병합) 판결.

3) 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고합569 판결.

4) 수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고단6344 판결.

업무보조 직원에게 성폭력을 행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처벌되는 예도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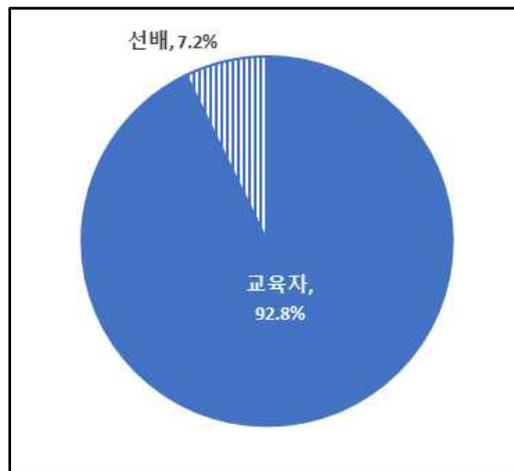
전문체육의 경우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경우에도 태권도장에서 아동기에 추행을 당하고 10년이 넘게 계속 태권도를 배우다가 성년의 나이가 되어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도 발견된다.⁶⁾

<표 II-6> 스포츠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단위 : 건)

가해자의 지위	교육자*	선배	합계
사건수	77	6	83

주 : * 교사, 감독, 코치, 강사, 사범 등



주 : 교육자는 교사, 감독, 코치, 강사, 사범 등

[그림 II-4] 스포츠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나) 선배에 의한 성폭력의 잔인한 양상

선배에 의한 성폭력(6건)은 훈련뿐만 아니라 합숙에 있어서도 더 긴밀하게 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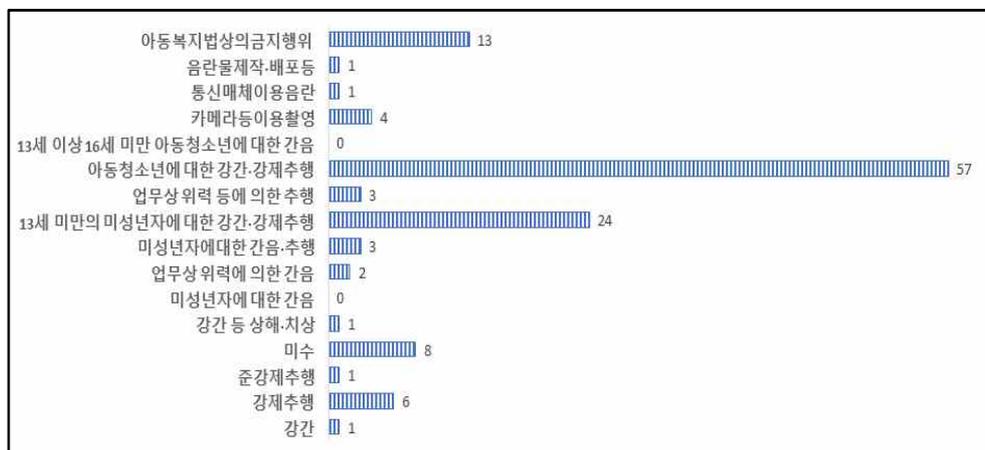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5. 18. 선고 2018고정45 판결.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85 판결.

공유하기 때문에 감독, 코치, 강사, 교사보다 더 심각한 양상의 성폭력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청양고추, 마늘과 쌈장만으로 쌈을 만들어 먹인다거나 향문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성기를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단순한 안마가 아니라 마사지를 하게 하고, 음부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⁷⁾⁸⁾ 성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높은 발생 비율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87건 중 82건이 미성년자가 피해자다. 성폭력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림 II-5] 스포츠 성폭력 사건 피해 유형(중복)

나.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

1) 직업적 진로를 이용한 성폭력의 횡행

전문체육의 경우 교육자의 지위가 직업적 진로와 결부되어 성적, 진학, 취업, 시합 출전 기회 부여, 국가대표 선정 영향력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선수들이 가해자의 성적 요구나 성적 침해에 대해 거절하거나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합195 판결.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 33 판결.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쉽고, 침해의 정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3728 판결

피고인은 2012. B대회 C 국가대표팀 코치, 2015. B대회 C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고, 2017. 1.부터 D소속 E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선수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등 E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2018. 1. 18.경 B대회 국가대표 남자 C팀 감독으로 임명되어 국가대표 여자 C 선수들인 피해자들을 지도해왔다. 한편 피해자들은 C 실업팀에 갓 입단했거나 실업팀 입단을 목표로 하면서 C를 계속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장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함부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입장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들을 따로 불러내거나 훈련 중 자세교정지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① 피고인은 2017. 10.경 F, E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고,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보호장구인 갑의 옆 쪽에서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 ②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H(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그렇게 하면 안되지, 다시 해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 ③ 피고인은 2017. 겨울 20:00~21:00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I(가명, 여 23세)에게 자세를 알려준다는 빌미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 ④ 피고인은 2018. 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21:00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대련 파트너끼리 서로 목마 태우고 체육관을 왕복하는 훈련을 하던 도중 다른 선수의 어깨에 올라타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 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 K(가명, 여, 20세)의 앞쪽에서 지도를 한 후 갑자기 그녀의 가슴 보호 장구인 ‘갑’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손이 닿도록 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알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 ⑥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 K(가명, 여, 20세)의 자세를 잡아준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 보호 장구인 ‘갑’의 옆 부분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⑦ 피고인은 2018. 2.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죽도를 들고 준비 동작을 하고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만 보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⑧ 피고인은 2018. 3.~4.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L(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열심히 해,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⑨ 피고인은 2018. 3.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볼을 꼬집고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⑩ 피고인은 2018. 4.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대련 파트너끼리 서로 목마 태우고 체육관을 왕복하는 훈련을 하던 도중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나를 업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에 매달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⑪ 피고인은 2018.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21:00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중, 양손으로 죽도를 잡고 ‘중단’ 자세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M(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빌미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⑫ 피고인은 2018. 3.~5.경 사이에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N(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귀에 염증이 생겨 테이핑을 한 상태였던 그녀의 귀 쪽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이게 뭐냐”라고 속삭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⑬ 피고인은 2018. 3.~5.경 사이에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N(가명, 여, 25세)의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빌미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⑭ 피고인은 2018. 5.경 위 연수원 숙소 건물 1층에서 국가대표 여자선수팀 감독인 O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오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N(가명, 여, 25세), G(가명, 여, 25세)을 발견하자 O에게 “애네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줘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들의 몸을 짝 끌어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⑮ 피고인은 2018. 5.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P(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⑯ 피고인은 2018.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18:00경 충북 증평군 Q에 있는 ‘R’ 앞에서, 목욕을 끝내고 나와 앉아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살이 너무 빼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뒤돌아보라고 한 후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쓰다듬으며 “몸에 있는 살도

다 빠졌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⑰ 피고인은 2018. 5. 2. 23:00경 S에 있는 T 대학교 연수원 주차장에서, 실업팀 입단을 목표로 하고 있던 피해자 U(여, 22세, 가명)의 휴대전화로 “언니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나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내가 너를 국가대표에 뽑아 줬다, 실업팀에 보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손 잡아봐도 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안아봐도 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다가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⑱ 피고인은 2018. 5. 30.경 V 부근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C국가대표팀 전지훈련을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여자 선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K(가명, 여, 20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면서 컷속말로 “너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⑲ 피고인은 2018. 5. 31. 00:30경 V 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명, 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오도록 한 다음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나 안고 싶은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옷 속에 손을 넣어 등부터 엉덩이 위부분까지 만지고, 이어서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웅크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⁹⁾

2) 성폭력의 정도가 심한 전문체육

또한 전문체육은 합숙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생활을 공유하고 일상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서 성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단순한 학교수업보다 전문체육의 경우 탈의와 샤워 등부터 집에 가서 해결하기보다는 체육관에 설치된 샤워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정도와 빈도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그리고 시합 성적이 좋지 않다거나 연습을 게을리 했다거나 연습을 잘하지 못했다는 등 신체접촉, 성폭력의 핑계가 더 다양한 측면이 있다.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79 판결, 대법원 2019도9323 상습강제추행죄로 확정.

피고인은 2016. 9. 4. 23:00경 E에 있는 F403호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관원인 피해자 G(여, 14세)를 불러 발마사지를 시키다가 근력을 잡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스토프 자세를 잡아보라고 한 후 자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티셔츠와 바지를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태권도를 장래 진로로 삼고 있어 관장인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곤하니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고 완곡하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만 더 잡고 가자.”며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마사지를 빙자하여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면서 “만지면 기분이 어때냐, 흥분하지 말라.”고 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팔 같아서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¹⁰⁾

3) 정서발달을 크게 해치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에서의 성폭력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의 경우 전문체육에 비해 정서적 발달이 중시되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 정도가 더 나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교사가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루밍을 동반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인격과 성적 도덕관념을 형성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가해자의 성폭력의 피해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C에 있는 D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14세)와 3~4년 전부터 태권도 사범과 학생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4:00경 위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학생 F와 함께 영화를 본 후 침낭을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하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헛기침을 하고 몸을 비틀며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¹¹⁾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5, 2017고합191(병합), 서울고등법원 2017. 11. 7. 선고 2017노2458 판결.

11)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춘천)2015노194, (춘천)2015전노27(병합)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고합41, 2015전고7(병합) 판결.

4) 태권도 관장이나 사범에 의한 아동 성폭력

태권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제다목에서 체육단체 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으로서 체육종목으로 지정된 유일한 종목일 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스포츠이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적어도 1, 2개의 태권도장이 있고, 유치원에 진학하기 이전부터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도 많은 아동과 학생들이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현실이다.

판례분석결과 태권도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생활체육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일상에 조금 더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만큼 성폭력의 정도가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성폭력 사건의 양상이 태권도 관장이나 태권도 사범에 의해 태권도장에서 또는 아동이나 학생을 집에 바래다주는 셔틀버스 등의 차량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학교나 유치원만큼이나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와 교육받는 아동이나 학생의 신뢰를 심하게 배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¹²⁾. 또한, 태권도 관장이 도복 띠를 매어주겠다며 7세 여아의 음부를 추행하고¹³⁾, 태권도 사범이 탈의실에서 만 6세 여아의 음부를 추행하며¹⁴⁾,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장에서 8세 여아의 음부를 추행¹⁵⁾하거나 탈의실에서 12세 여아를 강간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또한, 태권도 사범이 셔틀버스 안에서 잠든 13세 여아를 무릎에 눕히고 뽀뽀를 하거나¹⁷⁾, 태권도 학원의 조교가 9세 여아를 자신의 집이나 개인 차량으로 불러들여 추행한 사례도 발견된다.¹⁸⁾

5) 15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강간치상 사건

스포츠 성폭력의 몸을 매개로 한 폭력은 피해자의 나이가 10세에서 11세인 경우에 가해졌으나 고소가 15년 후에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15년

12) 대구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167 판결.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7. 선고 2019고합6 판결.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합115 판결.

15)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고합296 판결.

16) 울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합2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5388 판결에서 확정.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62 판결.

18)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노3268 판결.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¹⁹⁾

피해자를 진찰한 R의 정신과 전문의 S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폭력범죄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도 당시 상황이 불현듯 떠오르거나 악몽으로 재현되는 침습적 증상, 당시 경험과 관련한 자극이나 단서로 유발되는 과각성 반응, 감정의 변화, 감각적 변화, 인지적 변화 등이 지속적이며 고동스럽게 반복되고 있다. 최근 피고인과의 조우 및 형사재판의 진행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최근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8개월 이상 치료한 T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M 역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해자는 과거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재노출 후 불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외상과 연관된 악몽, 반복회상 등의 증세와 우울감 등을 보이고 있고, 과거 외상에 대한 침습적인 사고 및 반추, 특히 남성에 대한 피해사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M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상에 노출되면 분명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에서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이것이 상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특정 감각, 이미지 등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악몽을 계속 꾸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양상에 관한 증인 M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한 채 감내하면서 주변에는 위와 같이 단지 복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달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 밖의 종목불상 관장이 매주 4-5회씩 11세(여)의 피해자 등을 승용차, 체육관 사무실, 체육관 등에서 수백회에 걸쳐 폭행, 협박, 위력으로 강간한 사건도 드러난다.²⁰⁾ 또한, 태권도 관장이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태권도를 배우던 만 20세의 아르바이트생을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²¹⁾ 유사강간행위 또한 죄질

19)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춘천) 2017노15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118로 확정.

20) 대구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고합171, 2009전고3(병합) 판결.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합228 판결.

이 매우 불량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유도코치가 합숙소에서 12세의 여아인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정액을 먹게 하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14회에 걸쳐 추행한 사건이 있었다.²²⁾

6) 빈번한 신체적 접촉과 추행사이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달리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²³⁾ 또한 추행의 경우 신체의 부위를 불문하고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를 포괄한다는 것이 오래된 판례의 법리 중 한 축이다.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²⁴⁾

그러나 기존의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성폭력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과 무관하게 무죄를 실시한 판결들도 발견된다.

피해자는 당시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받고 있던 중 농구경기를 하던 남학생이 던진 농구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이를 본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피해자의 주위로 몰려든 점, 당시 강당 밖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피고인이 때마침 강당으로 들어와 학생들이 몰려있는 것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250 판결.

2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을 보았고, 학생들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앞으로 데려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구공을 맞은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괜찮냐고 묻는 등 상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주무른 후 보건실에 가보라고 말을 한 점, 학생이 수업 도중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우 뇌진탕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하여 일부 신체 부위에 자극을 주어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체육교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변에 남학생들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체육교사의 지위에서 한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²⁵⁾

7)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판례는 학교 체육교사가 학교 강당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여학생 2명(여, 16세)에게 서퍽보드 신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엉덩이를 받치게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²⁶⁾, 태권도 관장이 태권도를 전공하려고 하는 수강생(14세)에게 수강생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차량 안에서 손을 잡아달라고 하여 손을 잡고, "외롭다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여 포옹하여 준 사안에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⁷⁾ 또한 태권도 코치가 훈련 도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지가 크다, 자지 좇나게 크지 않냐"라고 말하고 성기를 친 사건 또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다.²⁸⁾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25) 광주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전주)2016노11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20872 판결로 확정.

26) 부산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고단7694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762 판결에서 확정.

27)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춘천) 2018노49, (춘천) 2018 전노5(병합)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186 판결에서 확정.

28) 인천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고단6503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2561 판결에서 확정.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다(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²⁹⁾

8) 소결 : 분석 및 평가

스포츠 교육에 있어 체벌이 훈육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체벌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회적 통념의 실상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성폭력/폭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개는 시험의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연습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접촉 역시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쉬라고 한 후 낮잠을 허락해 놓고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나무란다거나 디테일에 대해 구두로 꼼꼼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안한다"고 화를 낸다거나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그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평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

2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분이다.³⁰⁾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은 상대방이 매우 불편해 하거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태권도 사범이 도복 띠를 고쳐 매준다면서 음부를 추행하고, 유도 코치가 도복 띠를 잡는 동작을 하면서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추행하는 등 가해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틈 타 추행을 하고 있다.³¹⁾

자세 교정이나 신체 측정 등 객관적으로 신체 접촉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을 중심으로 상황적 맥락을 세밀히 살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체육교사가 탁구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의 겨드랑이를 껴안거나 어깨를 주무른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위계 등 추행)가 성립한다고 보았고³²⁾, 배드민턴 수업 시간에 뒤에서 껴안거나 손을 잡은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강제추행)가 성립한다고 보았다.³³⁾ 그리고 복싱코치가 자세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18세의 피해자에게 엉덩이와 골반, 옆구리, 등의 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접촉하고, 45세의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슴부위로 들이밀며 몸에 밀착시키면서 코너로 몬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³⁴⁾ 또한 검도부 코치가 체벌 중 검도부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집은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³⁵⁾ 판례는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장에서 10세 여아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등에 업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경우 또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³⁶⁾ 판례는 체육교사가 수업 중 “내 딸 같다”며 볼을 감싼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배를 베고 눕거나 팔짱을 끼고 강하게 안으며 몸을 밀착시킨 경우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³⁷⁾

광주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전주)2016노119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 침해 여부를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의 추행 개념에 비추어 볼 때

30) 대전지법 2013. 5. 2. 선고 2012고합711 판결.

31) 대구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합578 판결.

32)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7노363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844 판결로 확정.

33) 대구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488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1587 판결로 확정.

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30. 선고 2018고단716 판결.

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30. 선고 2017고합213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442 판결.

36) 대구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노481 판결.

37) 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고합 28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창원) 2018노277 판결.

음부 추행을 하던 가해자인 교사가 농구공을 맞은 피해자 학생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 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 침해여부를 피해자의 주관적 감각을 소거한 채 이전의 추행여부와 관계없이 '농구공을 맞은 상황적 맥락'만을 중심으로 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으로 밀착된 관계에 있는 체육교사나 감독, 코치의 신체적 접촉은 추행과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남용되기 쉽다. 일상적으로 체육교육의 기회를 이용하여 불필요하게 어깨나 팔, 손 등을 자주 만지는 경우 스포츠 성폭력 사건의 경우 판례는 학생들의 주관을 중시하여 추행을 구성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터치가 교육상 꼭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추행에 불과한지 학생들은 안다고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학교에는 불필요한 터치로 특히 여학생들이 불편해하는 남자 교사들이 있게 마련이었는데 그러한 추행 또한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회로 근절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양형 분석

1) 양형사유 분석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고려하는 양형사유는 개개의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포츠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판결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적극적인 특별양형가중요소의 판단 필요성

앞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폭력 가해자의 종류는 크게 교사적 지위와 선후배 동료로 분류되고, 교사적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보호자나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특히 전문체육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학과 진로에 관한 생사여탈권을 무기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양형사유에 반영하여야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특별 가중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다. 분석 판결들

은 이와 같은 스포츠 분야의 특성과 관련된 특별양형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거나 하나만 고려하거나 복수로 고려하는 등 사안마다 다르다.

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오히려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아 특별양형가중인자로 판단되는 것이다. 13세 미만의 경우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도 특별양형(가중)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양형기준이 정의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자체만으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높은 법정형을 부과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 또한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양형(가중)인자로, 청소년에 대한 범행을 일반양형(가중)인자로 정하고 있다. 이때 특별양형인자란 일반양형인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법원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양형(가중)인자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이중평가금지원칙에 따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⁸⁾

분석 대상 판결 중에서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특별가중요소로서 고려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면서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인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인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본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고, 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교사로서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성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38) 윤덕경, 장미혜, 이미정, 김차연(20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2016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별책-」, 여성가족부, 16면

교사로서의 책무와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간음하는 등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는바,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하였다.³⁹⁾

법원은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요소로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양형의 이유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코치였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⁴⁰⁾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그 태권도장의 관원들이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판단하였다.⁴¹⁾

또한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인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의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은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학교 체육관등에서 코치와 제자라는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밖에 폭행, 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다수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모두 고려하였다.⁴²⁾

특히 범행 장소 중 일부는 학생인 피해자가 보호받아야할 교육현장인 학교내이다.⁴³⁾

그런데 피고인이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배드민턴 부원인 피해자(여,10세)를 위력으로 성추행한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9)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84 사건

4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04

4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노49

42)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96

4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04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만을 고려하였다.⁴⁴⁾ 또한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태권도장의 관원이었던 피해자(여, 14세)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례에서도 특별양형인자가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면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나이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만 13-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개인 골프 강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어서 위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실시⁴⁵⁾한 판례도 있다.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스포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특별양형요소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나)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사유

(1) 피해 회복의 어려움 반영

스포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시 성폭력 피해 그 자체를 넘어, 스포츠 분야에서 자신의 직업과 꿈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런 피해자의 상황을 양형 사유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특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H는 다른 배구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다른 지역으로 갔고, 피해자 F는 배구선수의 꿈을 접었다.⁴⁶⁾

피해자 G는 이 사건으로 장래 사이클 선수로서의 꿈을 접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까지 하였다.⁴⁷⁾

44)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65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68

46)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3

47)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92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신적 위계 관계 고려

스포츠는 그 특성상 지도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정서적인 위계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이 피고인과 사귀었다는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도 있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이다. 그루밍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루밍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⁴⁸⁾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의 그루밍(길들이기)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정식으로 사귀었다는 상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원인 4명의 피해자들에게 여러차례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00에게는 잠든 사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 및 엉덩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없고 오히려 자유롭고 친밀한 관계로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 피해자들과 나눈 메시지 대화 등을 보면 특히 피해자 00, 00의 경우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00(여, 13세)은 피고인과 정식으로 사귀기도 한 점, 피해자 00, 00가 피고인을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가치관이나 인격이 정립되지 않았고, 사리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의 어린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당시 13세 이상이었고 피고인에 대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위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판사와 같은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를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의 범행과 양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이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있다고 보았다.⁴⁹⁾

48) 탁틴내일연구소(2017),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집 15면

4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노49

(3)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동성이 함께 운동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성폭력이 동성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법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를 양형사유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남자 청소년인 동성이어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고, 단순히 동성이라는 이유로 그 피해를 경미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동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 수치스러워서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이 지도하는 체육관 남학생들을 상대로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문제삼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 범행의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남자 청소년들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⁵⁰⁾

피해자는 “남자로서 남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했으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였다”고 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⁵¹⁾

다) 2차 피해와 관련된 양형사유

(1) 주변 이해관계인들의 은폐 등 개입에 대한 엄격한 판단 필요

스포츠 성폭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수생활과 미래, 직업 등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가 어떤 관련 단체내에서 발생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스포츠계의 선수들과 관계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성폭력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5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합45

5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95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스포츠 종사자들의 선수 생활에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개입, 은폐, 진술, 증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스포츠 종목의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가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분야가 위축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측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2차 가해의 발생 상황을 유도하고 개입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양형사유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학교 측은 배구부원들에게 이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배구부가 해체될 수도 있음을 내비쳐 사실상 종전 입장을 바꾸게 강요함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도 피고인과 학교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한편, 나아가 피해자들을 질책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다른 배구부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을 따돌리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는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⁵²⁾

(2) 피고인 선처 탄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피고인은 자신의 감형을 위해 주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의 한 측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성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주변인들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배, 허벅지, 엉덩이, 음부등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 4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60세에 가까운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중학교 1학년(13세)이다.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는 5인 이상의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보호시설(학교) 종사자의 범행이고 감경요소는 처벌불원이다. 그런데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교사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어 교사직을 상실하였고, 30년 이상 성실하게 교사로 근무한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제자, 지인

52)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3

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⁵³⁾

하지만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격히 선고한 판결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일부 제자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며, 비록 피고인의 처와 딸을 비롯한 가족, 제자, 학교장과 배구협회장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교육자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⁵⁴⁾

또한 피고인의 평상시의 직무 태도나 생활 태도는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학생들을 위해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평소의 생활태도나 직무수행이 훌륭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⁵⁵⁾

(3) 처벌불원의 신중한 고려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도 처벌불원은 대표적인 감경사유이다. 그런데 스포츠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할 필요가 있다.

53)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122

54)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3에서 징역2년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를 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라고 보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다.

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0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때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는 성범죄의 본질상 “처벌불원”을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회복적 사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는 재산범죄와 같이 피해회복이 금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닐 뿐더러, 현실에서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를 반영하더라도 감경에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 외에 “건전한 성적 발육” 또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처벌불원을 감경사유로 할 때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피해의 회복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⁵⁶⁾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도 처벌불원은 대표적인 감경사유이고, 특히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감형이 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처벌불원의 조건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실시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포츠 성폭력의 경우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감경요소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라고 보아, 원심에서 징역 8년, 120시간의 성폭력

56) 윤덕경·박복순·황의정·김차연·정선영(2014).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5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감경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⁵⁷⁾

피고인은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태권도 도장의 제자로서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던 바..... (중략)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⁵⁸⁾

라) 피고인 개인과 관련된 양형요소

(1) 피고인의 연금 등 퇴직 후 개인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법원은 피고인의 재직 중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이로 인해 퇴직 이후에 겪게 되는 연금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거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는 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배, 허벅지, 엉덩이, 음부등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교사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과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보면서도.....(중략) 피고인이 재직 중의 사유인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급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⁵⁹⁾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는데, 재직 중의 사유인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급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⁶⁰⁾⁶¹⁾

57)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84 사건

58) 대구고등법원 2018노65, 원심인 2017고합390은 징역6년을 선고하였다.

59)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122

(2) 피고인의 성적 만족 동기 고려 부적절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나 만족을 위하여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여자 농구부 코치였고,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사안에서 코치와 제자라는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밖에 폭행,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추행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를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부 폭행 행위는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⁶²⁾

(3) 감경요소로서 ‘공탁’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상당금액 공탁”의 의미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이다. 이러한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6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고합35

6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16년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 1/2+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 1/3)

62)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9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 공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여자 농구부 코치였고,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밖에 폭행,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폭행행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함께 2,3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하였다.⁶³⁾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감을 명하였다.⁶⁴⁾

2) 양형기준에 부합한 처벌

양형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양형 기준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018년 7월 현재 총 3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⁶⁵⁾ 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양형의 도출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법원조직법 제81의7 제1항) 법원은 판결문에 양형 기준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어(동조 제2항) 간접적으로 양형이유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⁶⁾

스포츠 성폭력은 특히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차 피해발생의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생활, 선수생활 뿐 아니라 직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63)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96

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2017

65) 김혜정(2018), 양형기준 준수 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法曹 2018·10(Vol. 731), 129면

66) 김혜정(2018), 위의 글, 132면

당하거나 목격하고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 다시 가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스포츠를 하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는 판결들이 있다. 스포츠 성폭력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벌하고 재발을 예방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벌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미약한 처벌이 아닌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E,12세)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사이로 몸을 넣고 성관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에 입을 맞추었다. 또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손으로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만지다가 상의를 벗겨 나체인 상태로 태권도 품새를 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또한 수회 피해자 F(6세)에게 강제로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 배와 성기 사이에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나체인 상태인 피해자를 껴안은 사안이다.

이와 같이 태권도 도장의 사범인 피고인이 그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동성의 제자들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수회에 걸쳐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별가중인자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중사자의 범행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년~16년 6월이다. 그런데 선고형은 징역 4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그 하한을 일탈하였다.⁶⁷⁾

3) 항소심 감형 지양

많은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기대하며 항소를 제기한다. 이 때 법원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되,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대하게 항소심에서 그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포츠 성폭력 판결중에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감형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는 스포츠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바람직하지 않아 지양함이 타당하다.

67)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71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사죄를 구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 있던 도장에서 10세, 13세에 불과한 자매들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으로 쳐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횡수,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 따른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이수하고 있던 와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은 다수 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년~15년 20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에 대한 정보공개 3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다.⁶⁸⁾ 그러나 그 후 항소심에서는 별다른 양형사유의 변동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고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었다.(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공개명령이 면제되었고, 5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다.⁶⁹⁾

2.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 분석

가.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를 통해 본 폭력 실태

1) 학교체육에서 높은 발생률

스포츠 폭력에 대한 판례 43건 중 세부내용이 불상인 1건을 제외한 42건 중 생활체육은 8건, 학교체육은 27건, 전문체육은 7건이다. 성폭력 사건과 같이 학교체육, 즉 학교운동부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지시 불이행, 태도불량, 단체생활에서의 잡음이나 불화,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삼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훈련 도중 원산폭격 또는 '업드려 뺨쳐' 등의 체벌로 시작하여 중량목검이나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구타로 이어지는 체육부의 폭력은 쉽게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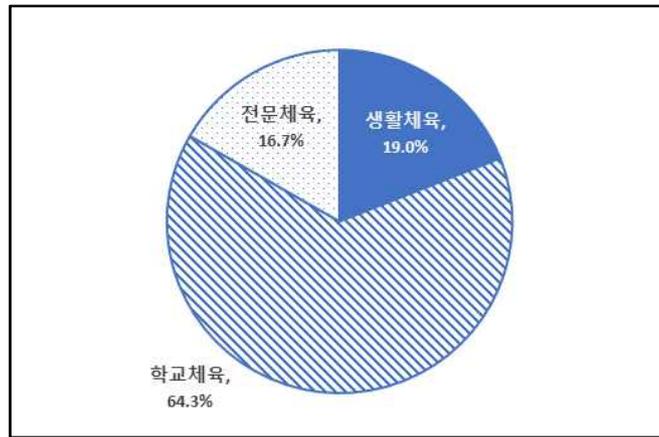
68)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41

69) 대구고등법원 2018노481

<표 II-7> 체육 목적별 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체육목적	생활체육	학교체육 (유치원포함, 수업, 학교운동부 포함)	전문체육	합계
사건 수	8	27	7	42



[그림 II-6] 체육 목적별 폭력 사건 비율

스포츠 폭력에 대한 판례 또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모두 다양한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태권도 종목에서의 피해가 8건으로 가장 높다.

<표 II-8> 전문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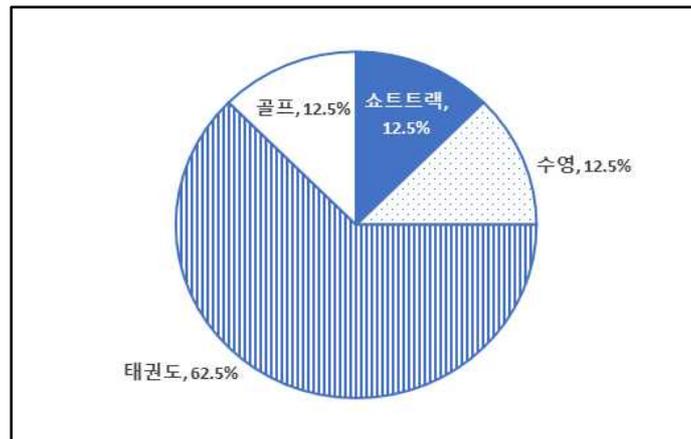
(단위 : 건)

종목	골프	뇌성마비 장애인 특수경기	럭비	빙상	수영	태권도	피겨 스케이팅	합계
사건수	1	1	1	1	1	1	1	7

<표 II-9>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쇼트트랙	수영	태권도	골프	합계
사건수	1	1	5	1	8



[그림 II-7]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발생 비율

<표 II-10> 학교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기계체조	농구	배구	수영	사이클	야구	역도	우슈	합계
사건수	1	3	2	1	1	4	1	1	
종목	유도	정구	축구	탁구	태권도	투척	피구	핸드볼	
사건수	1	1	3	1	2	1	1	3	27

2) 훈련 중 피해 발생

스포츠 폭력의 경우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에서 훈련 중 기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볼 코치가 웨이트 장에서 여중생 핸드볼 팀원(15세)이 다리를 제대로 들어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cm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다거나⁷⁰⁾, 쇼트트랙 강사가 10세의 선수가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수대기실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는 사례⁷¹⁾ 등이 그것이다.

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3306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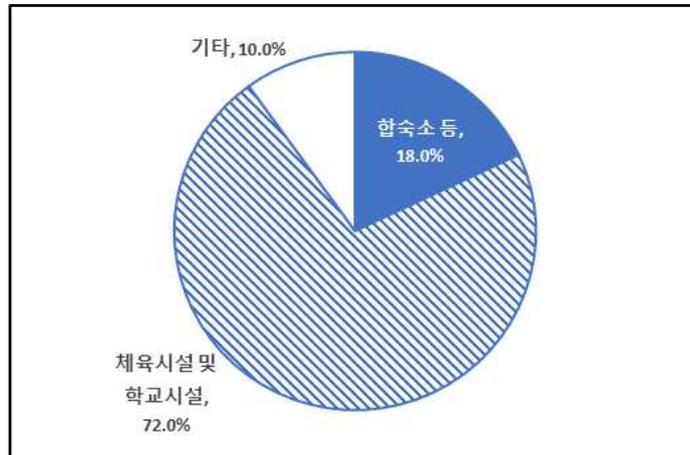
71) 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1530 판결.

<표 II-11> 스포츠 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단위 : 건)

피해장소	합숙소 등	체육시설 및 학교시설	기타*
사건수	9	36	5

주 : * 주점, 숙소 밖 공터, 야산, 피씨방



주 : 기타는 주점, 숙소 밖 공터, 야산, 피씨방 등

[그림 II-8] 스포츠 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3)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

감독, 코치 등에 의한 폭력은 대체로 훈련 도중 잘하지 못한다거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수 또는 학생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양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는 때로는 은밀한 괴롭힘의 양상으로, 때로는 단체기합 중 모욕이나 폭언을 동반한 학대에 이르기까지 하고, 선수들이 코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진로 등에 불이익을 입게 될까 걱정하여 훈련과정으로 수인하게 되기도 하는 단순한 폭행이나 타박상을 넘어 선수생활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폭력의 양상은 중증장애인이 선수들에게도 흉포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장애인 체육교사가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편한 선수들을 시합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 콤파스, 나무로 제작한 심판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휠체어에서 내려와 구르게 하고 발로 밟는 등의 학대를 하고, 교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까지 불가능한 선수들의 훈련비를 갈취한 사례⁷²⁾가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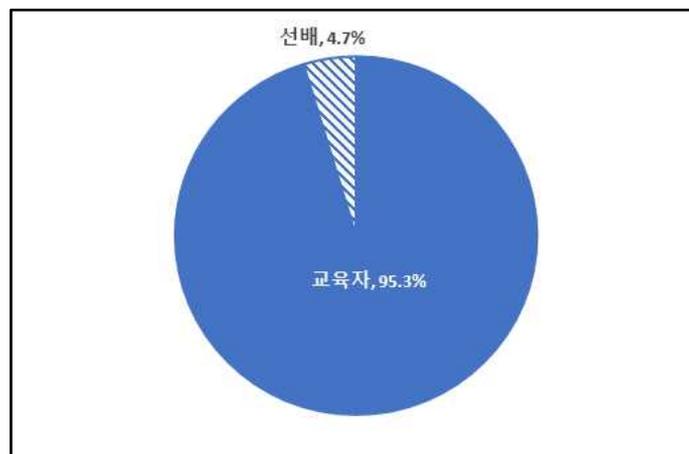
선배에 의한 폭력은 훈련뿐만 아니라 합숙에 있어서도 더 긴밀하게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독, 코치, 강사, 교사보다 더 심각한 양상의 폭력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숙소에서 가위 등 흉기로 폭행하거나 체육관에서 BB탄을 발사하고 쇠파이프(60cm)로 폭행하거나⁷³⁾ 태권도 학과 선배들이 공동하여 후배들을 야산으로 끌고 가 각목으로 폭행하고 소위 '정신교육'을 행하는 등⁷⁴⁾ 괴롭힘의 정도와 양태가 더 심각하고 불량하다.

<표 II-12> 스포츠 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단위 : 건)

가해자의 지위	교육자*	선배	합계
사건수	41	2	43

주 : * 교사, 감독, 코치, 강사, 사범, 강사 등



주 : 교육자는 교사, 감독, 코치, 강사, 사범, 강사 등

[그림 II-9] 스포츠 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분석 대상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위는 '교육자'인 성인이 가장 많은데 반해, 피해자는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스포츠 분야 폭력

72)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단163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노739 판결.

73)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4641 판결.

74) 수원지방법원 2011. 9. 16. 선고 2011고단3472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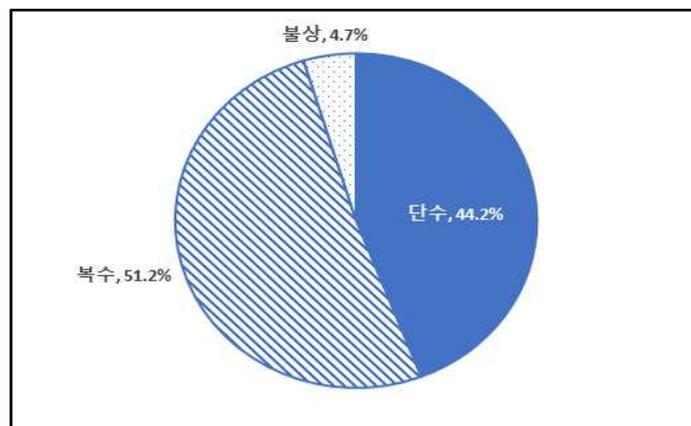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수직적 위계 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스포츠 분야의 폭력 사건은 훈련 및 합숙 과정에서 단체 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사건별 피해자 수는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분석 대상 사건들의 피해자 수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복수(2명 이상)인 사건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자 수

(단위 : 건)

단수	복수	불상	합계
19	22	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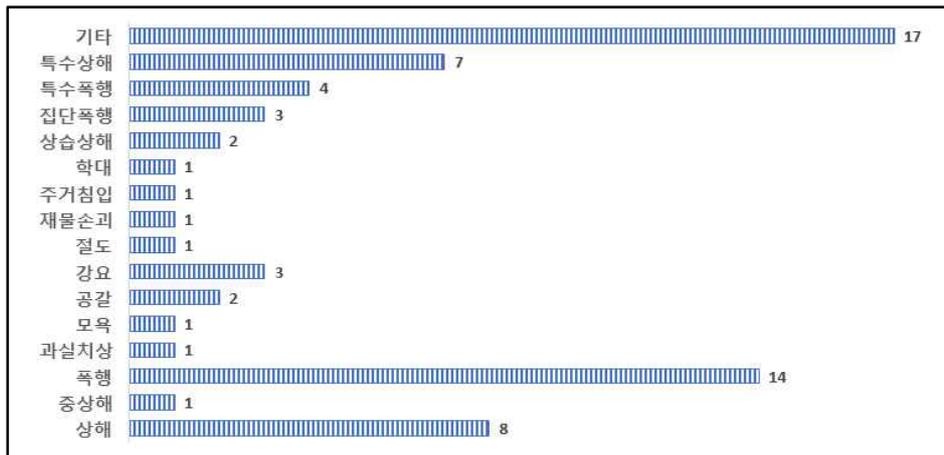
[그림 II-10]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자 수

4) 폭행에서 공동상해까지 피해 유형의 다양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폭행으로 14건이었다. 상해(8건), 특수상해(7건), 특수폭행(4건), 집단폭행(3건), 강요(3건) 순이다. 폭행 중 특수폭행은 4건, 상해 중 특수상해는 7건이었다. 또한 드물게 사이클부 선배들이 사이클부 후배들을 집단 구타하여 공동상해를 구성하는 사건도 있었다⁷⁵⁾.

75) 대구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400 판결.

44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관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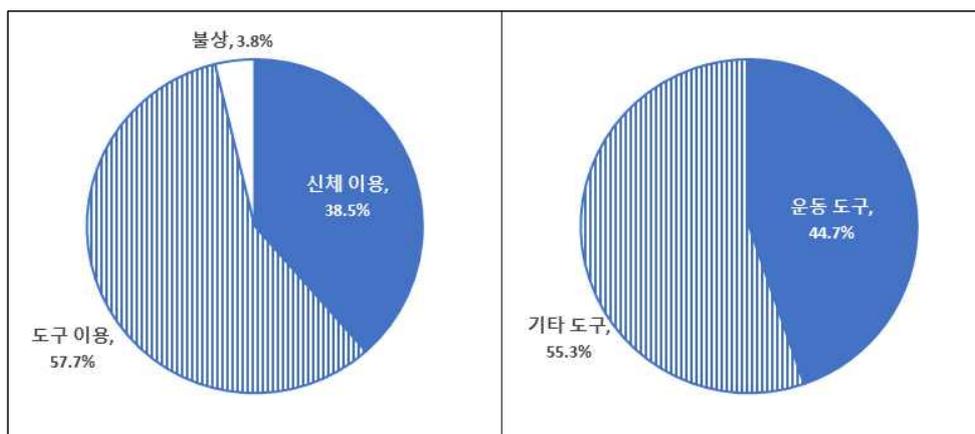


주 : 기타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그림 II-11]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 유형(중복)

5) 도구를 이용한 폭행

폭행 도구에 따라 사건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체를 이용한 폭행보다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구를 이용한 폭행 중에서는 운동 도구가 아닌 기타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림 II-12]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의 폭행 도구(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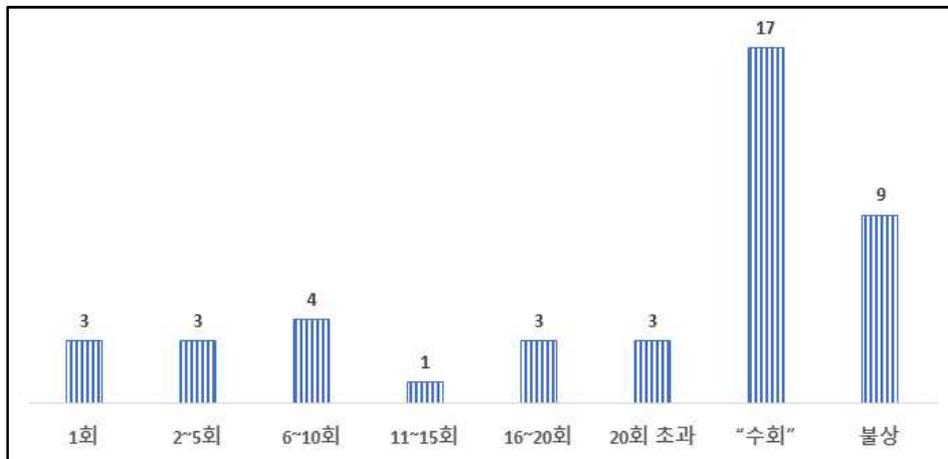
6) 상습적 폭행

폭행 횟수에 따라 분석 대상 사건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1회 폭행한 사건은 전체의 약 7%에 불과했다.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폭행이 장기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표 II-14>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의 폭행 횟수

(단위 : 건)

1회	2~5회	6~10회	11~15회	16~20회	20회 초과	“수회”	불상	합계
3	3	4	1	3	3	17	9	43



[그림 II-13]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의 폭행 횟수

나.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 분석

1) 전지훈련장에서 감독에 의한 폭력

피고인은 초등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C 축구팀 감독으로, 2017. 1. 23.경부터 2. 24.경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D(12세)는 E소속으로, 함께 위 훈련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8. 현지시각 14:00경 해외 전지훈련장 인근길에서 일행과 함께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쳐 건너지 못하였다가 급히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 차량이 급정거하는 등 교통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F에게 “서로 머리를 박아라.”라고 시켜 서로 머리를 들이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8. 14:20경 해외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가.항 기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엎드려뺨쳐” 자세로 있도록 하고, 그 곳에 있는 나무막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위 나무막대가 부러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15:00경 해외에서 연습경기를 하며 피해자가 실수를 할 때마다 경기를 하다말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교체시킨 후, 벤치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피하는 과정에서 눈 부위를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14:00경 해외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고인이 말을 할 때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철로 된 발코니 난간 조각(길이 약 60cm)을 휘두르며 “너 몇 대 혼날거냐, 너는 좀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15:00경 해외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다른 아동이 감독인 피고인에게 “빌려 주기 싫은데 빌려달라고 자꾸 그러다.”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 곳에 있는 검정색 슬리퍼를 손에 들고 이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너랑은 도저히 못있겠다. 중등부로 보내겠다.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남아있겠다고 말하게 하는 등 해외에 있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 10:00경 해외 전지훈련 연습장에서 시합에서 진 후 피해자가 다른 선수의 탓을 하며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눈 부위를 맞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적응장애로 정신과적 치료유지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도록 하였다.⁷⁶⁾

76) 울산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고단2228 판결

2) 코치 등에 의한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⁷⁷⁾

판례는 검도 코치가 폭행에 사용한 중량목검이나 야구부 투수코치가 폭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⁷⁸⁾ 태권도부 코치가 사용한 하키채와 걸레자루도 마찬가지이다.⁷⁹⁾ 야구부 선배가 길이 30cm에 불과한 지름이 비교적 얇은 야구방망이를 동근 손잡이 부분으로 폭행하는 데에 사용했다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부러진 야구방망이는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상 특수폭행죄를 구성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⁸⁰⁾ 판례는 태권도부 코치가 정신봉이라는 이름으로 성기 등을 구타에 사용하여 출혈과 멍자국이 남은 상해사건에서의 길이 50~60cm의 몽둥이 등 70cm의 몽둥이, 길이 60~70cm, 굵기 및 지름 3~4cm의 나무몽둥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⁸¹⁾ 판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감독이 골프훈련장에서 골프훈련생을 1m의 골프채로 150회 구타한 경우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⁸²⁾

판례는 피겨스케이팅 강사가 13세의 선수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팔을 X자로 세계 잡아당긴 후 어깨 스트레칭을 계속하게 하여 선수가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과실치상죄를 인정하 바 있다. 미끄러운 빙상장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강사에게는 선수의 신체유연성에 맞는 세기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하고 선수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훈련을 중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⁸³⁾ 판례는 핸드볼 코치가 체육관에서 17세의 훈련생의 머리와 배를 수차례 장시간 구타하여 뇌손상 등 의식

7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78)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5740 판결.

79) 청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고단2833 판결.

80) 청주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220 판결에서 확정.

81) 인천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411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2561 판결에서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단1084 판결.

8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31 판결.

83)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 12. 4. 선고 2015고정2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노7611 판결.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중상해)를 인정한 바 있다.⁸⁴⁾

3) 폭력의 상습성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⁸⁵⁾

판례는 핸드볼 코치가 핸드볼 선수들을 체육관에서 수회에 걸쳐 머리를 포함한 신체 부위를 무차별 구타해온 사건에서 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이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단순폭행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⁸⁶⁾

4)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판례는 태권도 관장이 9세 아동이 체육관에서 “아이씨”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심하게 구타한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투척 코치가 훈련 중인 16세 여아를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나뭇가지(50cm)로 엉덩이를 때린 부분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았고, 휴대폰 모서리로 정수리를 폭행한 부분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았다.⁸⁷⁾ 판례는 수영강사가 7세 아동의 이마를 10회 정도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힌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았다.⁸⁸⁾ 또한 판례는 배구부 코치가 초등학교

84)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노1653 판결.

85)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86) 대구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노500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434 판결에서 확정.

87)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2911 판결.

88) 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1235 판결.

훈련생(11세)에게 욕설을 한 후 뺨을 때리고 종아리를 찬 후 머리카락을 잡고 세워 뒤로 밀어 겁을 먹게 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았다.⁸⁹⁾ 판례는 수영코치가 실내수영장에서 13세의 아동을 오리발이나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멧들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밟은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⁹⁰⁾

판례는 초등학교 기계체조부 코치가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들을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거나 하키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교회에 못가게 하겠다면서 백핸드(양손 짚고 뒤로 덤블링하는 동작)를 1시간 시킨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⁹¹⁾ 스포츠 폭력이 훈련 목적을 빙자하여 가해자의 권력을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 스포츠를 그만 두거나 교회에 갈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양형 분석

1)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어려움 고려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중상해의 결과를 가져오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한다. 따라서 결국 피해자에게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되는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법원이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폭력의 경우에는 단순한 폭행 상해를 넘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체벌의 종류와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가 적지 않아 보이고, 특히 피해자 E는 이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나쁘다.⁹²⁾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핸드볼팀 코치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 E를 뇌손상 등에 따른 의식

89) 부산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단5579 판결.

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7고단161 판결.

9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26. 선고 2016도678 판결.

9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03

불명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고, 역시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다른 4명의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등을 발로 걷어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 E 측의 의사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⁹³⁾

2) 피고인의 장래성 고려 지양

법원은 스포츠 폭력 발생 시 피고인의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위, 가능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폭력 가해자가 그 스포츠 분야에서 이룩한 기존의 업적에 따라 그 양형이 달리 정해지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납득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스포츠 폭력을 예방하고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피고인 A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냈고, 피고인 B는 10여개의 사이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장래 유망한 사이클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우리나라 사이클 종목의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대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로 활동하지 않으면 선수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번 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⁹⁴⁾

3) 신체적 접촉이라는 훈련과정의 특성 고려 신중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폭력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연습 등에서 신체적 접촉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포츠의 특성이 신체 접촉이 수반된다고 하여 그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완화된다면, 앞으로도 스포츠 분야의 폭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어린 피해 학생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지만, 이는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농구 경기의 특성 및 고된 훈련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적 및 목표

93)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3

94)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92

달성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훈육의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가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⁹⁵⁾

4)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스포츠 분야의 폭력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스포츠 분야에서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또는 주위의 상황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신중하게 판단하기도 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분명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8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 및 그 부친이 “9월 22일, 저는 그 날 저녁 감독님의 폭행이 아닌 훈계로 느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휩쓸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폭행이라고 했습니다. 감독님께 죄송하고 본의 아니게 일이 커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감독님께서 저희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의 안전한 생각에 감독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시 감독님과 졸업할 때까지 같이 야구하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빨리 같이 야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도와주세요”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경찰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 K 및 그 부친은 “처음 일이 발생할 때의 감정은 좋지 않아 안 좋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생각을 돌이켜 보건대 감독님의 훈계를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그 제목이나 본문 어디에도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J는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아버지가 쓰라는 대로 위 사실확인서를 쓴 것이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쓰라고 시킨 것이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고 위 각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⁹⁶⁾

95)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96

96) 청주지방법원 2018노2

3. 기타 관련 판례 분석

가. 민사판결

1) 피고(책임자)의 범위

피해자인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접 상대방인 가해자 외에도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고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학교의 설치 경영자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교사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결국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방지의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장, 지방자치단체, 법정대리인인 부모들도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가) 학교의 교장, 교사, 학교법인의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 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학교의 설치 경영자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교사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입학행위'를 통하여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에 재학계약이 성립되어 학생들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상응하여 학교법인은 학생들의 생명, 신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법인은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만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모두 사고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⁹⁷⁾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생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단 피고 F은 피고 재단 소속의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이 사건 사고는 초등학교가 아닌 A중학교의 조기 합동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훈련도 초등학교의 요청이 아닌 A중학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초등학교 교장이 A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조기 합동훈련에 초등학교 체조선수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한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F은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A중학교 교사인 피고 G, H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⁹⁸⁾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00도는 00중학교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3은 위 00중학교 태권도부의 코치이자 이 사건 가해행위의 가해자인 피고 김2의 아버지였던 점, 피고 경기도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년 4월 경 폭행사실이 처음 발각되었고, 당시 피고 김3은 이에 대해 알았음에도 2009년 5월 중순 경까지 이 사건 가해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일반 학교생활과는 달리 운동부의 합숙생활이나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694

훈련의 경우 육체적인 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사이에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므로 보통의 경우보다 학교폭력의 여부에 관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해행위는 OO중학교의 태권도부 코치였던 피고 김3및 OO중학교의 교사들로서는 예측가능한 행위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피고 OO도는 피고 김3이 소속된 OO중학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⁹⁹⁾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직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공무원이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공무원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객관적으로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소속의 교육공무원인 피고가 망인에게 폭행 등 불법행위를 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불법행위가 OO중학교 내지 전지훈련 장소에서 이루어져,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피고 A가 설치·경영하는 OO중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 사회적으로 학교내 폭력, 교사의 체벌 등이 문제되었으므로, 피고 A는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일탈한 불법적인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다른 곳보다 체벌이 심할 것이라 예상되는 체육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는 소속 공무원인 피고와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¹⁰⁰⁾

다) 부모들의 공동불법행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학생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중학생으로서 부모들과 주거를 같이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학생들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 아직 변별력이 부족한 피고 학생들이

99)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65 손해배상

100) 대구지방법원 2005. 7. 12 선고 2004가합9224 판결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학생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부모들은 민법 제 750조, 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자신들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¹⁰¹⁾

2) 책임의 제한

가) 인과관계의 판단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민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단,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사례는 피고는 망인이 소속된 배구부 감독이었고, 피고 A는 ○○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는 수회에 걸쳐 망인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망인을 폭행하거나 망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전지훈련 때 그 정도가 더했다. 위 피고는 다른 배구부 학생들에게도 폭행과 폭언을 가했으며, 배구부 학생들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줄곧 견지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한 다음에야 비로소 배구를 시작하여 미숙할 수밖에 없는 망인을 비롯한 두세 명의 배구부 학생에 대한 위 피고의 폭행과 폭언은 더 심했다. 이에 결국 망인이 자살을 한 사안이다.

피고는 지속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배구부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으며, 특히 전지훈련 때 그 정도가 심했던 점, 위 피고는 전학을 거론한 망인을 비롯한 몇 명의 배구부원을 다른 배구부원보다 더 혹독하게 대한 점, 그럼에도 망인은 그날 훈련이나 경기에 대한 일기를 적으면서, 위 피고를 싫어하는 심정을 언뜻 드러낼 뿐, 위 피고를 원망하기보다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되짚고자 애쓰고,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다짐과 유머 넘치는 말로 일기의 끝을 맺으며, 위 피고의 폭행과 폭언에도 밝고 맑은 모습을 지키려고 했던 점, 이처럼 망인은 스스로 열심히 훈련에 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 했었고, 이러한 망인의 모습을 통해 감수성이 예민하면서도 성실하고 밝은 모범적인 여중생의 전형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의 폭행은 잘못에 대한 교정, 즉 훈련을 게을리 하였거나, 불량한 태도를 보인데 대한 징계권의 행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고, 위 피고는 훈련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망인을 오직 일정한 결과물을 위해 폭행하여 망인에게 모멸감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폭행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를 넘어선 부당한 폭력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 피고의 폭행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위 피고의 가혹행위 및 폭행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증거

1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7325

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살과 폭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들은, 망인이 좋은 신체조건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던 운동선수였으나, 피고의 폭행과 폭언을 못 이겨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사망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사망과 폭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 안에는 사망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청구뿐만 아니라, 피고의 불법적인 폭행과 폭언에 의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에 대한 위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시춘기 소녀인 망인에게 상당한 고통감을 주고 망인의 자존심을 손상시킴으로써, 망인과 망인의 부모형제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리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고, 그 폭행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폭력에 불과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¹⁰²⁾

나)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훈련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은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학생의 사리분별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또한 훈련 참여가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제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A학교의 교사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고, 교사가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학생의 사리분별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체육특기생을 교육하는 ○○고등학교의 체조장 내에서 체조부 훈련과정 중 하나인 자율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이며, 자율훈련에의 참여 여부가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사실상 원고와 같은 하급생들은 3학년 상급생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체조부 학생들의 생활관계와 위계질서상 상급생이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하급생의 의사

102) 대구지방법원 2005. 7. 12 선고 2004가합9224 판결

결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으며, 체조라는 운동의 특성상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동작은 평소 하는 동작을 약간 변형한 것으로 안정된 착지를 위하여 교사가 연습을 시킨 바 있는 동작이어서, 체조부 감독교사로서는 자신이 지시하고 감독하는 훈련 중 운동 자체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학생들간 자율훈련 시간에 사실상 강제력 행사로 인한 사고발생 또는 감독교사 없이 위험한 동작의 연습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감독교사인 B로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코치나 3학년 주장 등을 통해 자율훈련 시간을 통제하거나 위험한 동작의 연습을 막는 등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체조부 감독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B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교육 공무원인 B의 직무상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동작은 원고와 1학년 학생들이 평소 연습해 보지 않은 매우 고난도의 동작이라 이 사건 사고 당시 1학년 C는 철봉에 올라갔다가 겁이 나 그만두었고, 원고는 몸을 푼다며 한 바퀴 뒤 공중돌기만 하였다가 1학년 D가 겨우 해내자 다시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체조부 선후배 사이의 생활관계 및 위계질서상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사실상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강제 정도가 유형력의 행사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도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동작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40%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¹⁰³⁾.

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등으로 가해자에게 해임 등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11건 중 3건이 인용되었다. 원고가 폭력,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적절한 지도 감독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3) 과실상계 후 손해액에서 서울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은 치료비 26,090,580원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10,436,232원(=26,090,580원 x 40%)을 공제하면 673,787,763원이 남는다. 정신적 손해로는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기지급된 위로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원고에 대하여는 20,000,000원, 그 부모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징계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징계가 이루어진 이후 그 징계가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이유는 절차적 하자과 실체적 하자였다.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 판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하자의 경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징계처분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특히 절차적 하자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진다면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등을 이유로 해임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하여 피해자가 다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양궁종목 운동 보급 및 운동선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이고, 원고는 중학교에서 양궁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제1,2항) 그리고 징계혐의자의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서면, 전화, 메일 등으로 출석요구를 하여야 한다(제29조).

그런데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거나 진술을 포기할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 당시 진상조사위원들이 원고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한 진술을 스포츠공정위원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진술이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진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현장조사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혐의자인 원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권과 진술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그리고 원고가 평소 C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적절한 지도 감독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증거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는 제명과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서, 폭행사건 경우나 이후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¹⁰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폭행의 태양 및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A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었고, 다른 펜싱대표팀 지도자들도 원고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폭행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징계 전에 원고에게 자신을 변명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하고, 2008. 12. 23. 김**이 원고와 전화 통화한 내역은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9조 제4항에 정한 사실조사의 절차일 뿐 의견진술의 기회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2. 31.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08. 1. 13. 개최되는 11차 선수보호위원회에 원고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2009. 1. 7. 소환조사 거부 의사가 담긴 재심답변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2009. 1. 8. 재심청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는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 재심청구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수보호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출석을 거부하고 위 재심청구를 스스로 취하한 이상, 당초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폭력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 당초 A가 주장한 바와 같이..... (중략)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10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29

단정할 수 없음에도 A가 주장하는 폭행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각 폭행이 발생한 발단이 된 것은 국가대표 선수로 해외전지훈련을 가는 공항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채로 선수가 담배를 피운 행위에 대한 훈계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선수단 훈련관리지침에 선수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점(지침에는 선수촌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지훈련도 선수촌내에서의 훈련의 연속의 과정이라 할 것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폭행 이전에는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물의를 일으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징계처분의 과정에서 선수폭행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여론을 고려하여 중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A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선수보호위원회의 징계결의가 이 사건 각 폭행이 일어나고 언론에 위 폭행이 보도된 이후 불과 13일만에 이루어졌던 점, ⑥ 원고가 국가대표 코치로 재직하던 기간 중, 2006. 5. ...대회에서 B가 1위, 김\$\$가 2위를 하였고, 2006. 6. ...대회에서 김%%이 1위, 김\$\$가 2위, B가 5위를 하였으며, 2006. 12. 개최된 대회에서 김\$\$가 3위, B가 6위를 하였고, 2007. 단체전에서 1위, 개인전에서 B 1위, C가 3위를 하였고, 2008. 단체전에서 2위, 개인전에서 B가 3위, 김\$\$가 5위를 하는 등의 업적을 쌓았던 점, ⑦ A는 2009. 6.경 원고와 합의한 후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⑧ 이 사건 각 폭행에 관하여 원고는 중국적으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아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8. 원고에 대하여 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¹⁰⁵⁾

1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0700

III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 성폭력범죄 전반의 입법론적 체계 재구성	5 6
2. 의제강간연령 상향 검토	56
3.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67
4. 사설 체육학원 규제 강화	76
5. ‘스포츠기본법’ 제정	8
6.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엄격한 양형조사	70

1. 성폭력범죄 전반의 입법론적 체계 재구성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의사가 제압될 필요가 없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가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을 때 의사가 이미 제압된 상태로 보고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량으로 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징역 2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량으로 하고 있다. 판례는 종목 불상 코치가 용돈을 준다면서 피해자들을 객실 또는 차량에서 가슴, 허벅지를 추행하고 키스를 한 사안에서 기존의 기습추행 법리와는 다르게 강제추행 대신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을 하였다.¹⁰⁶⁾ 위 판례는 징역 4년형(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형법 체계상 강제추행이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더 중한 범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행의 수단이나 정도에 있어 체계론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함께 판례의 균형 또한 필요하다.

2. 의제강간연령 상향 검토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의제강간을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형법 제305조)함으로써 의제강간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의제강간 외에도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는 하지만 강간이나 유사 강간으로 판결이 났을 때의 적용이므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 적용된다. 그 외에도 아청법에서는 형법과 달리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도 강간으로 규정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규정하는 형법보다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계나 위력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위계

106)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춘천)2018노133, (춘천)2018전노9(병합)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762 판결에서 확정.

나 위력,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¹⁰⁷⁾.

외국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은 아래 표와 같이 13세~16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¹⁰⁸⁾ 우리나라와 일본이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표 III-1> 외국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대륙법계							영미법계	
한국	독일 ¹⁰⁹⁾	프랑스	중국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¹¹⁰⁾
13세 ↓	14세 ↓	15세 ↓	14세 ↓	16세 ↓	13세 ↓	14세 ↓	16세 ↓	16세 ↓ (연방 형법)

앞서 스포츠 분야의 위계적이고 도제적인 환경에서는 폭행, 협박이 아닌 수단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관계에 있는 스포츠 분야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침해와 폭력에 대한 보호와 권리적인 측면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폭행·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조항이 존재하는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특히 청소년의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보호’라는 측면의 소극적 의미로만 제시될 뿐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배복주, 2019: 186).

107) 정은경 (2016). 의제강간죄 연령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7(2), 19-20면.

1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541호))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8.11

109) 독일은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 대상이면서 가해자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10) 미국은 각 주마다 14세부터 18세까지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주는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3.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13세미만 아동까지 성폭력/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사건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등이 발생하면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는 1차적으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피해자가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드러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신고상담 시스템을 대체하는 효과적 신고, 접수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서 성폭력/폭력 사건의 접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의료, 법률 지원까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유기적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¹¹¹⁾

4. 사설 체육학원 규제 강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고,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하여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을 의미한다(제2조제1호). 이처럼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 체육학원에서는 아동·학생들이 폭행/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신고하게 하여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111)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제1차 권고문,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권고.2019.4.19.

있다. 더 나아가 동법에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포함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폭행/성폭행 방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예방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 사건은 가해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를 엄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성폭력/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은폐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즉, 스포츠 국가주의, 체육 권력, 메달 중심주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 등 성폭력의 발생과 은폐,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이 법에서는 ‘스포츠 고유의 가치’와 ‘생활체육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한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책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기본법에는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 시책(성차별·폭력 방지 및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조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편제하여 상담에서 사건처리, 재발방지 조치까지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반 한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 기본법제정을 권고하였다. 이 법에는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법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현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

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였고,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¹¹²⁾

※ 일본의 “스포츠 기본법” 전문

전문

스포츠는 세계 공통의 인류문화이다.

스포츠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 건강 및 체력 유지 증진, 정신적인 충족감의 획득, 자율심 그 밖의 정신의 함양 등을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행해지는 운동 경기 그 외의 신체 활동이며, 오늘날 국민이 생애에 걸쳐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며, 모든 국민이 그 자발성에 의해 각각의 관심, 적성 등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스포츠에 친숙해, 스포츠를 즐기거나 또는 스포츠를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스포츠는 차세대를 담당하는 청소년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타자를 존중하고 이와 협동하는 정신, 공정함과 규율을 존중하는 태도와 극기심을 길러 실천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키우는 등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 및 지역과 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해 지역의 일체감과 활력을 양성하고 인간 관계의 희박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사회의 재생에 기여한다. 그리고 스포츠는 심신의 건강 유지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장수 사회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운동선수의 부단한 노력은 인간의 가능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일본선수의 활약은 국민에게 자부심과 기쁨, 꿈과 감동을 심어주고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이들을 통해서 스포츠는, 우리나라 사회에 활력을 주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넓게 기여한다. 또한 스포츠의 국제적인 교류나 공헌이 국제 상호 이해를 촉진해, 국제평화에 크게 공헌하는 등, 스포츠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완수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스포츠를 추진하는 가운데 뛰어난 스포츠 선수가 길러지고 그 스포츠 선수가 지역에 있어서의 스포츠 추진에 기여하는 것은 스포츠와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의 제휴와 협동에 의한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을 지지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국민 생활에 있어서의 다면에 걸치는 스포츠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스포츠 입국을 실현하는 것은 21세기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결한 중요 과제이다.

여기에 스포츠 입국 실현을 목표로 국가전략으로서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112)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제4차 권고문,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 2019.6.21.

6.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엄격한 양형조사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서 제시되는 개별적인 양형요소의 적정성과 반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양형을 위해 인정하기 어려운 법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수정되어야 하며 사회의 여러 집단들 간에 양형의 편차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요인으로서 ‘피고인이 고령,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연령이나 사회계 등에 따른 양형의 편차를 유발할 수 있는 법외 요인들이기 때문에, 구금형의 판단 과정에서 판사의 지나친 재량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의 요인’은 판사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박철현, 2012: 93).

예를 들어 앞서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판결에서도 동성 간의 성폭력이라는 점, 피고인의 퇴직후 연금 수령에 대한 고려 등은 적절한 양형사유인지 문제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절대다수가 3년 이하의 실행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합의를 통해 양형이 감경되거나 석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과, 아동성범죄에 있어 감경의 사유가 가해자의 반성과 같은 태도와 분위기에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다는 것과 판사에게 주어지는 판단의 재량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가해자의 합의, 보상을 위한 노력, 반성, 뉘우침,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등 사건 당사자의 정서 상태가 판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도 지적되고 있다(한창근 외, 2017: 89). 이처럼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한 스포츠 분야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반영은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

스포츠 분야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당사자만의 문제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스포츠 분야의 종목 특성상 진실한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법원에 제출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 판결에서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이 사건을 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피고인도 구치소에 구금되어 벌을 받았으니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법원

조사관에게 ‘피해자 본인의 마음 상태가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은 면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서울고등법원 2016노793)”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진실한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탁틴내일연구소(2017),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 (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집 15면
- 고은하·이한규·김용승·장덕선·김숙(2005). 운동선수 구타 실태 조사 및 근절방안. 체육과학 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학교 운동부 정상화 대책 TF팀 회의자료.
- 김영미·유정숙(2009).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경험과 운동 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8(5), 75-92.
- 김영인(2000). 대학 운동선수와 일반학생들의 사회조직망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체육 학회지, 13, 137-143.
- 김정명(1999).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 체육특기생. 한국청소년학회지, 6(2), 21-40.
- 김혜경(2018),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 연구, 2018 26권 2호, 한국피해자학회, 147-172.
- 남상우·이석호·여정권·박창선(2007).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4), 117-127.
- 류태호·이명선·이규일·임용석·신주영·배중윤·임영신(2010),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박철현(2012).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8(4), 77-99.
- 배복주(2019),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토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2019.11.7. 183-187
- 윤덕경·장미혜·이미정·김차연·김민영(20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별책-」, 여성가족부, 16면
- 윤덕경·박복순·황의정·김차연·정선영(2014),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명선·김상범·변혜정·이성은·국미애·오미영·이진영(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이성철·민병남(2009). 운동선수의 피학대 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 및 폭력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8(5), 65-74.
- 정은경(2016), “의제강간죄 연령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7권 제2호(통권 제106호, 2016.여름)

- 조광민·이종수·정지명·지민준·손혁상·오지윤(2006).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 학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조원희·한창근·박연주(2017).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제도 : QCA방법론을 이용한 양형분석.” 사회복지연구, 48(2), 71-95
- 허현미·황정임·선보영(2008). 여성선수 성폭력에 대한 여성 지도자의 인식. 한국스포츠사회 학회지, 21(2), 401-421.
- 황정임·선보영·허현미(2007). 프로스포츠 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 조사. 문화 관광부.
- 황정임·박선영·윤덕경·장명선·동제연·고현승(2017),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9.11.7.),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초중고 63,211명 전수조사 결과발표



부 록

<부록 1> 스포츠 관련 정의 및 지도자 자격 조건 등 법제 현황	7
<부록 2> 스포츠 분야 성폭력 금지 관련 법제 현황	93
<부록 3> 스포츠 분야 폭력 금지 관련 법제 현황	102
<부록 4>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701
<부록 5>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	341

<부록 1> 스포츠 관련 정의 및 지도자 자격 조건 등 법제 현황

가. 스포츠 관련 정의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국가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등이 있다. 각 법률에서는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	---------	--



		<p>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p> <p>가. 제5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p> <p>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p> <p>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가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p> <p>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p> <p>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p> <p>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p> <p>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p> <p>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p> <p>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p> <p>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p>
<p>생활체육진흥법</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p> <p>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p> <p>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p> <p>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	---------	---

나. 체육지도자 자격조항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등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p> <p>③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p> <p>④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p>	<p>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p>	<p>①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p>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 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다. 폭력 관련 피해자보호 및 사건처리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4조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 밖에 학교에서 선후배간의 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방지법상의 절차에 의해, 가해자가 교원일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피해자보호 및 사건처리가 이루어진다.

<p>국민체육진흥법</p>	<p>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p>	<p>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 맞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 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p>	<p>제15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p>	<p>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p>
	<p>제15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p>①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③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⑤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p>①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④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p> <p>⑤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p>①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춘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p>②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p>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p>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p>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p> <p>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제18조의2(재심청구)	<p>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p>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p>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p>②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④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⑥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p>①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p>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p>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p>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p>⑥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p> <p>⑦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⑧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p>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p>	<p>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p>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p>	<p>①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p>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p> <p>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⑦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p>	<p>①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p>②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⑤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의 설치·기능)</p>	<p>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④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④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p>	<p>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②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p>



		<p>⑤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p>⑦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p> <p>⑧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p>	<p>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진학 9. 퇴학처분 <p>②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p> <p>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④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p> <p>⑤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⑥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p> <p>⑧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p> <p>⑨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⑩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⑪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⑫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7조의2(재심청구)	<p>①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⑤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p>①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	<p>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p> <p>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p>①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p>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p>①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p>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p>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부록 2> 스포츠 분야 성폭력 금지 관련 법제 현황

관련 법률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가. 형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p>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p>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p>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p>③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⑤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⑥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⑦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p>	<p>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p>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p>	<p>①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p>①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 <p>②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③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p>①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p> <p>②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p>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p>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제15조(미수범)	<p>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p>①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p> <p>②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p> <p>③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p>④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p>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p>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p>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p>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p>③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p> <p>⑤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p> <p>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p>①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p>①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p>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강간 등살인·치사) ①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 <p>②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p>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⑥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p>①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p> <p>②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p> <p>③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p>④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라. 아동복지법

아동 복지법	제3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p>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p>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

<부록 3> 스포츠 분야 폭력 금지 관련 법제 현황

스포츠 분야 폭력 금지 관련 법률로는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가. 형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제2조(폭행 등)	②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p>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p> <p>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p> <p>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p> <p>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p> <p>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p> <p>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p> <p>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p> <p>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p> <p>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p> <p>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p> <p>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p> <p>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p> <p>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p> <p>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p> <p>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p> <p>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p> <p>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p> <p>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p> <p>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p> <p>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p>
--	--	---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 민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부록 4>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관례

<부표 1>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일반적 사항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서울고법 2016노495 - 서울동부지법 2015고합195	야구	남	남	고등학교 야구부원	고등학교 야구부원	16	17	1	학교 화장실, 전지훈련 호텔객실, 연습장 인근 화장실 11:00~21:30
- 부산지법동부지원 2018고단2167	태권도	여	남	태권도 강습생	태권도 사범	5~6	불상	1	체육관 지하 1층 15:00경
- 부산고법 2017노340 - 울산지법 2016고합230	불상	남	남	지도받는 E학생	고등학교 E코치	16	불상	4	호텔 객실 16:00경
- 서울북부지법 2018고합62	태권도	여	불상	관원	태권도장 사범	13	불상	1	태권도장 셔틀버스 22:00~22:30경
- 광주지법 2013고합170, 2013전고32(병합)	태권도	여	남	태권도 학원생	태권도 사범	11, 12, 7, 11	불상	4	탈의실, 펜션
- 서울고법 2018노1149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8고합16, 2018전고1(병합)	축구	여	불상	학생	축구 코치	16	불상	1	체육관 사무실
- 인천지법 2019고합6	태권도	여	불상	관원	태권도 학원 관장	7	불상	1	태권도 학원
- 서울고법 2012노1268 - 수원지법 2011고합658	축구	여	남	축구부원의 어머니, 축구부원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50, 불상, 17	47	3	감독 숙소, 학교 정문 앞길 모텔객실16:00~18:00 모텔계단17:00~18:00
- 대전고법 2019노171 - 대전지법 2018고합473	역도	여	남	역도부 소속 선수	고등학교 역도부 코치	16	불상	1	학교 역도장, 여자숙소 22:00,15:30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서울고법 2018노235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고합115	태권도	여	불상	태권도 학원의 원생	태권도 사범	6	불상	1	태권도 학원의 여자 탈의실, 관장실 16:00~17:00경
- 서울고법 2018노2429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8 고합33	야구	남	남	야구부 2학년	중학교 야구부 3학년	14, 13, 13	14	3	야구부 기숙사 08:00~23:00경
- 대법원 2018도14186, 2018전도96(병합) - 서울고법(춘천) 2018노 49, 전노5(병합) - 춘천지법 2017고합98, 123(병합)	태권도	여	남	태권도장 관원	태권도장 운영자	12, 13, 14, 13	불상	4	F아파트 후문 근처 20:0 호텔 신발장 부근 공간 21:00 버스 맨 뒤 좌석 07:00 태권도장 사무실 17:00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23:00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
- 대구지법 2018고합578	유도	여	남	유도부 학생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16	불상	1	리조트 객실, 훈련장
- 대구고법 2019노167 - 대구지법 2018고합460	태권도	여	불상	학원생	태권도 사범	15	불상	1	스타렉스 학원차량
- 대법원 2019도4908 - 서울고법(춘천) 2018노 133, 2018전노9(병합) - 춘천지법 2018고합33	불상	여	남	C를 배운 학생	B단체 소속 C코치	만 14, 15세	만 31세	2	피고인의 차량 모텔·호텔 객실
- 서울고법 2017노3123 - 수원지법안양지원 2017 고합104	불상	여	남	E부 소속 학생	중학교 E부 코치	13	불상	1	학교 화장실, 학교 옥상 훈련장, 모텔 13:00~20:00,02:00경
- 부산고법 2017노764, 2017전노54(병합) - 울산지법 2017고합271, 2017전고34(병합)	태권도	불상	불상	도장에 다니는 同性의제자들	태권도장 사범	12, 6	불상	2	태권도장 13:40경~14:20경, 13:59경~14:05경 외 다수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인천지법 2018고단716	복싱	여	남	관원	복싱 코치	18, 45, 23, 24	불상	4	체육관
- 대법원 2013도9129, 2013전도187(병합) - 서울고법 2013노365, 2013전노32(병합) -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 895, 2012전고15(병합)	태권도	여	남	태권도장 관원	태권도 관장	초등 6학년 ~대학생이 되기까지	피해자 와 나이 차이 20살	3	태권도장의 사무실, 탈의실 합숙이나 대회 숙소
- 대전지법논산지원 2018 고합60	씨름	남	불상	씨름부원	초등학교 씨름부 코치(과견근무)	11, 10, 11, 11,	불상	4	초등학교 씨름교실, 모텔 객실
- 대전지법 2017노201 - 대전지법공주지원 2016 고합35	체육 수업	여	불상	초등학생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전담교사	11, 13	교사로 30년 이상 재직	2	학교 강당, 급식실
- 광주지법 2016고합193	농구	여	불상	중학교 농구부원	중학교 체육교사 겸농구부감독	15, 13, 13, 14, 14, 14	불상	6	합숙모텔 객실, 중학교 체육실, 관사, 피고인의 차량 08:00~08:00
- 대전지법 2012고합711	무용	여	남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체육과 교사	16	47	1	무용과 교실, 등산로, 학교 계단
- 대구지법 2009고합171, 2009전고3(병합)	불상	여	남	관원	도장 관장	11, 15, 12	35	3	피고인의 승용차, 캠프장 숙소
- 서울고법 2018노788 - 인천지법부천지원 2017 고합228	태권도	여	남	태권도장 아르바이트생 겸 어릴 때부터 배워온 제자	태권도장 운영자	20	불상	1	태권도장 체육관 16:00경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수원지법 2011고합569, 2011전고33(병합)	축구	여	남	축구부 선수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11~13세 까지	46	1	축구부숙소, 샤워실, 피고인 차량
- 춘천지법원주지원 2013고합41	축구	여	남	축구교실 소속 초등학교생	초등학교 방과후 축구교실코치	10	불상	1	피고인의 차량
- 청주지법 2018고합86	럭비	불상	불상	럭비부원	중학교 럭비부 코치	14	불상	2	럭비부 합숙소 10:00~11:00
- 서울고법 2016노793 - 인천지법 2015고합760	육상	여	불상	육상부 학생	초등학교 육상부 코치	11	불상	1	전국대회 참가 중 다수의 모텔, 민박 19:30~20:30경
- 대전고법 2013노263 - 대전지법 2013고합31	육상	여	남	육상부원	중학교 체육교사 겸육상부감독	15	불상	1	피고인의 승용차 19:00경
- 대구고법 2016노400 - 대구지법 2016고합92	사이클	남	남	고등학교 사이클부 후배	고등학교 사이클부 선배	15	2학년, 3학년	2	고등학교 기숙사 방, 기숙사 샤워실, 모텔 객실, 학교사이클부 실 저녁경~04:00
- 대법원 2016도6650 - 대전고법 2015노558 (환송전) - 대전고법 2016노306 - 대전지법 2014고합462	골프	여	남	골프 레슨 수강생	사설 골프 강사	13~16세 까지	불상	1	피고인의 주거지 내 여자선수 방
- 창원지법 2018고단506	태권도	여	불상	관원	태권도 학원 관장	8	불상	1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랑해♥♥, 엄청사랑해♥♥♥, 내 사랑 잘자, 뽀뽀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
- 대구고법 2016노559 - 대구지법 2016고합122, 2016전고15(병합)	체육 수업	여	남	중학교 1학년 학생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13	30년 이상 근무한 교사	5	학교 강당 내 사무실, 불령장, 체육관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대법원 2018도11762 - 부산지법 20171547 - 부산지법 2016고단7694	불상	여	남	체육수업을 듣는 재학생	고등학교 체육교사	16	불상	12	학교 강당 등
- 인천지법 2008고합633	골프	여	남	골프 지도받는 학생	프로골퍼	14	49	1	피해자의 방, 피고인의 차량 시합장 인근 모텔, 펜션
- 대구고법 2017노537 - 대구지법 2017고합238, 2017초기9389(병합)	불상	남	남	중학생 선수, 보조코치	E실업팀 감독	15, 21	불상	2	학교 사무실, 피고인의 승용차
- 광주지법 2017고합16	농구	여	불상	초등학교 6학년생 농구부원	초등학교 체육교사 겸 여자농구부감독	11~13	불상	3	학교 실내체육관, 사무실
- 광주고법 2017노288 - 광주지법 2017고합84	농구	여	남	농구부 동아리 소속 학생	중학교 체육교사	14	불상	1	학교 체육관 내 피고인의 방
- 광주고법 2017노355 - 광주지법 2017고합33	배구	여	불상	배구부원	고등학교 배구부 코치	17, 16, 16	불상	3	고등학교 체육관
- 서울고법 2017노1561 - 수원지법 2017고합104	탁구	여	불상	중학교 탁구부원	중·고등학교 탁구부 파견보조코치	13, 14, 13	불상	3	탁구부 여자 숙소, 훈련장 피고인의 차량
- 수원지법 2017노5506 - 수원지법 2016고단6344	농구	여	남	농구부원의 어머니	대학교 농구부 감독	55	불상	1	노래방 23:30경
- 대구지법상주지원 2016 고합45	복싱	남	남	피고인이 지도하는 체육관 남학생	체육관 복싱코치	13~16	불상	12	체육관, 여관, 모텔, 피고인의 승합차 체육관단체사위장
- 광주고법 2016노389 - 광주지법순천지원 2016 고합120	체지방 측정기 산체감사	여	남	중학교 학생	중학교 체육교사	15	28년간 교사로 근무	42	중학교 체육관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광주고법(전주) 2016노119 - 전주지법 2015고합199	체육 수업	여	불상	중학교 학생, 사격부원	중학교 체육교사 검사격부감독	13	30여 년 동안 교사로 성실복무	3	학교 강당, 체력단련실 입구
- 수원지법안산지원 2016 고합190	육상	여	불상	육상부 선수	중학교 육상부 코치	14	불상	1	모텔 객실
- 대전고법 2015노348 - 대전지법 2014고합296	농구	여	여	초등학교 농구부 선수	초등학교 여자농구부코치	10~12	남편이 30대 중반	9	체육관, 체육관 샤워실, 숙소, 모텔
- 부산고법 2019노119 - 부산지법 2018고합534	체육 수업	여	남	고등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체육교사 겸생활지도부장	17~18	해당 학교에서 19년 간 근무	5	고등학교 골프장, 학교 헬스장
- 춘천지법강릉지원 2015 노647 - 춘천지법강릉지원 2015 고단546	축구	남	불상	축구부 선수 겸 코치, 축구부선수	대학교 축구부 감독	22	불상	2	축구부 숙소 내 코치 방, 복도
- 대전고법 2016노31 - 대전지법서산지원 2015 고합103	역도	여	남	역도부 후배	중학교 역도부 선배	13	16	1	역도부 전지훈련지 모텔
- 서울고법 2015노1836 - 수원지법 2014고합600	쇼트 트랙	여	불상	쇼트트랙 실업팀 선수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22, 29, 11	불상	3	빙상장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4 고합207	배구	남	불상	배구부 신입생	중학교 배구부 코치	13	불상	1	배구부 코치실, 배구부 내 샤워실
- 광주지법순천지원 2014 고합75	정구	여	불상	여고 정구부 선수	여고 정구부 코치	17	불상	1	모텔, 21:40경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서울고법(춘천) 2014노124 - 춘천지법 2013고합122, 2013전고13(병합)	육상	여	남	육상부원	중학교 체육 교사이자 육상부 감독 겸 코치	13~16	61	8	호텔 숙소, 노래방
- 서울고법 2014노2704 - 수원지법 2013고합523	합기도	여	남	관원	합기도 운영자	13	불상	1	합기도 사무실, 도장 차량
- 서울고법 2013노2936 - 인천지법 2013고합239	불상	여	남	E 중등부 선수	E실업팀 선수	15	불상	2	전국경기대회 중 선수단 숙소 모텔 객실, 모텔 옥상
- 부산고법 2013노240 - 부산지법 2013고합122	농구	여	남	농구부원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	12	33	1	초등학교 강당 내 코치실
- 대구지법 2012고합1165, 2012전고17(병합)	배드 민턴	여	덩치가 크고 힘이센 피고인	배드민턴부 부원	초등학교 배드민턴부코치	10	불상	1	초등학교 강당, 탈의실 12:30~13:30경 15:30~16:30경
- 청주지법충주지원 2018 고합31	골프	여	남	골프 훈련생	골프연습장 운영자	15	불상	1	골프연습장
- 부산고법(창원) 2018노277 - 창원지법 2017고합289	체육 수업	여	남	고등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체육교사	16	55	1	학교 체육관
- 대법원 2015도3095, 2015전도47 - 서울고법 2016노2768, 2016전노192(고합) (과기환송심) - 서울고법 2014노3287, 2014전노355(병합)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4 고합190, 2014전고12 (병합)	야구	여	남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12	불상	1	초등학교 야구부 숙소 옆 체육관 계단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 168, 2015전고14(병합)	골프	여	남	골프 훈련생	개인 골프강사	13~14	불상	1	민박집, 모텔, 승용차
- 울산지법 2018고합23	태권도	여	남	태권도 수강생	태권도 사범	12	불상	1	태권도장 내 탈의실 22:30경
- 대구지법 2017고합390, 2017보고8(병합)	태권도	여	남	태권도 수강생	태권도 도장 사범	17	불상	1	도장 탈의실, 승합차
- 광주지법순천지법 2017 고합250	유도	여	남	유도선수	초·중학교 계약직 유도코치	12	불상	1	피고인의 집
- 서울고법 2018노2222 -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 고합53	양궁	여	불상	양궁부원	고등학교 양궁부 코치	17~18	불상	5	양궁대회장 숙소 호텔, 양궁장 휴게실
- 대전고법 2018노527 - 대전지법서산지원 2018 고합30	스태킹	여	남	중학교 재학생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12~13	불상	4	여자중학교 체육관
- 창원지법 2018고합234	태권도	여	남	관원	태권도장의 관장	14	불상	1	태권도 도장 탈의실, 피고인의 승용차 피고인의스타렉스승합차
- 대전지법 2017고합25, 2017전고10(병합)	태권도	여	남	관원	태권도장의 관장	14	불상	1	모텔
- 부산지법 2014고합604, 2014전고37(병합)	축구	남녀	남	축구부원과 축구부원의 어머니	중학교 축구부 감독과 코치	13, 14, 39, 39	불상	4	중학교 휴게실, 운동장 뒤 벤치의자
- 대법원 2019도9323 - 서울동부지법 2019노179 -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 3728	불상	여	남	C선수	C국가대표팀 감독	20~25	불상	불상	연수원 체육관

<부표 2>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 유형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서울고법 2016노495 - 서울동부지법 2015고합 195								○ 유사 성행위				
- 부산지법동부지원 2018 고단2167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 부산고법 2017노340 - 울산지법 2016고합230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법 2018고합 62								○ 준강제 추행				○
- 광주지법 2013고합170, 2013전고32(병합)						○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 서울고법 2018노1149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8 고합16, 2018전고(병합)								○ 위력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인천지법 2019고합6						○ 강제추행						
- 서울고법 2012노1268 - 수원지법 2011고합658								○ 강제추행				
- 대전고법 2019노171 - 대전지법 2018고합473								○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 서울고법 2018노235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고합115						○ 위력에 의한 추행						
- 서울고법 2018노2429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8 고합33								○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
- 대법원 2018도14186, 2018전도96(병합) - 서울고법(춘천) 2018노 49, 전노5(병합) - 춘천지법 2017고합98, 123(병합)			○ 성폭법상 13세미만 강제추행 미수			○ 강제추행		○ 위력에 의한 추행	○			○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대구지법 2018고합578			○ 아청법상 준강제추 행미수					○ 강제추행				
- 대구고법 2019노167 - 대구지법 2018고합460								○ 강제추행				
- 대법원 2019도4908 - 서울고법(춘천) 2018노 133, 2018전노9(병합) - 춘천지법 2018고합33								○ 위력에 의한 추행				
- 서울고법 2017노3123 - 수원지법안양지원 2017 고합104			○ 아청법상 준강간미수					○ 강제추행, 준강간				
- 부산고법 2017노764, 2017전노54(병합) - 울산지법 2017고합271, 2017전고34(병합)						○ 강제추행						
- 인천지법 2018고단716		○										
- 대법원 2013도9129, 2013전도187(병합) - 서울고법 2013노365, 2013전노32(병합) -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 895, 2012전고15(병합)				○				○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대전지법논산지원 2018 고합60						○ 위력에 의한 추행						○
- 대전지법 2017노201 - 대전지법공주지원 2016 고합35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광주지법 2016고합193								○ 강제추행				○
- 대전지법 2012고합711								○ 위력에 의한 추행				
- 대구지법 2009고합 171, 2009전고3(병합)			○			○ 위력에 의한 간음		○ 위력에 의한 간음	○			
- 서울고법 2018노788 - 인천지법부천지원 2017 고합228	○		○									
- 수원지법 2011고합569, 2011전고33(병합)						○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춘천지법원주지원 2013 고합41						○ 강제추행						
- 청주지법 2018고합86								○ 위력에 의한 추행				
- 서울고법 2016노793 - 인천지법 2015고합760						○ 위력에 의한 추행						
- 대전고법 2013노263 - 대전지법 2013고합31			○					○ 위력에 의한 간음				
- 대구고법 2016노400 - 대구지법 2016고합92								○ 강제추행				
- 대법원 2016도6650 - 대전고법 2015노558 (환송진) - 대전고법 2016노306 - 대전지법 2014고합462			○ 아청법상 준강제 추행불능 미수					○ 강제추행				
- 창원지법 2018고단506										○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대구고법 2016노559 - 대구지법 2016고합12 2,2016전고15(병합)								○ 위력에 의한 추행				
- 대법원 2018도11762 - 부산지법 20171547 - 부산지법 2016고단7694												○ 성희롱등
- 인천지법 2008고합633								○ 강제추행 강간				
- 대구고법 2017노537 - 대구지법 2017고합238, 2017초기9389(병합)				○				○ 위력에 의한 추행				○
- 광주지법 2017고합16						○ 강제추행						○
- 광주고법 2017노288 - 광주지법 2017고합84								○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 광주고법 2017노355 - 광주지법 2017고합33								○ 강제추행				
- 서울고법 2017노1561 - 수원지법 2017고합104								○ 강제추행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수원지법 2017노5506 - 수원지법 2016고단6344		○										
- 대구지법상주지원 2016 고합45								○ 강제추행				
- 광주고법 2016노389 - 광주지법순천지원 2016 고합120								○ 강제추행				
- 광주고법(전주) 2016노 119 - 전주지법 2015고합199								○ 강제추행				
- 수원지법안산지원 2016 고합190								○ 강제추행				
- 대전고법 2015노348 - 대전지법 2014고합296						○ 위력에 의한 추행			○			
- 부산고법 2019노119 - 부산지법 2018고합534								○ 강제추행				
- 춘천지법강릉지원 2015 노647 - 춘천지법강릉지원 2015 고단546							○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대전고법 2016노31 - 대전지법서산지원 2015 고합103								○ 위력에 의한 유사 성행위				
- 서울고법 2015노1836 - 수원지법 2014고합600						○ 강제추행	○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4 고합207								○ 강제추행	○			
- 광주지법순천지원 2014 고합75								○ 강제추행				
- 서울고법(춘천) 2014노 124 - 춘천지법 2013고합122, 2013전고13(병합)								○ 강제추행				
- 서울고법 2014노2704 - 수원지법 2013고합523								○ 강제추행				
- 서울고법 2013노2936 - 인천지법 2013고합239								○ 강제추행				
- 부산고법 2013노240 - 부산지법 2013고합122						○ 강제추행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대구지법 2012고합1165, 2012전고17(병합)						○ 위력에 의한 추행						
- 청주지법충주지원 2018고합31								○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
- 부산고법(창원) 2018노277 - 창원지법 2017고합289								○ 위력에 의한 추행				
- 대법원 2015도3095, 2015전도47 - 서울고법 2016노2768, 2016전노192(고합)(과기환송심) - 서울고법 2014노3287, 2014전노355(병합)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4고합190, 2014전고12(병합)												○ 성희롱
-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68, 2015전고14(병합)								○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울산지법 2018고합23			○ 의제강간 미수		○ 의제강간						○	○
- 대구지법 2017고합390, 2017보고8(병합)								○ 강간				○
- 광주지법순천지법 2017 고합250						○ 위력에 의한 추행· 유사 성행위						
- 서울고법 2018노2222 -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 고합53								○ 강제추행				
- 대전고법 2018노527 - 대전지법서산지원 2018 고합30						○ 위력에 의한 추행		○ 위력에 의한 추행				
- 창원지법 2018고합234								○ 강제추행				
- 대전지법 2017고합25, 2017전고10(병합)								○ 준강간				

사건번호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상 의 금지행위
- 부산지법 2014고합604, 2014전고37(병합)		○						○ 강제추행				
- 대법원 2019도9323 - 서울동부지법 2019노179 -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 3728		○ 상습 강제추행										



<부표 3>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가해 행태 및 양형 관련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서울고법 2016노495 - 서울동부지법 2015고합195	선후배 관계 보복우려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후배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반복적 유사성행위. 죄질 매우 나쁨 피해 회복 안됨, 처벌 원함 자백, 소년, 초범	무
- 부산지법동부지원 2018 고단216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 우려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3항 또는 제5항 적용 기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됨 반성, 초범,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일부 참작	유
- 부산고법 2017노340 - 울산지법 2016고합230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감 범행 부인, 반성 없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성적 만족보다는 우월적인 지위를 과시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의도	유
- 서울북부지법 2018고합 6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범행 인정, 초범, 합의	유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광주지법 2013고합170, 2013전고32(병합)		징역 8년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1.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금지 2. 놀이터나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금지 3.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어린 수련생에 대한 보호·훈육 책임 저버림 ∴ 죄질불량 전과 없음, 범행 인정	불상
- 서울고법 2018노1149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8고합16, 2018전고1(병합)	피해자를 추궁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시켜준 사회적 지위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명령	코치라는 지위 이용,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 합의 없음 범행 인정, 반성, 전과 없음, 피고인의 제자·지인들의 선처 호소	무
- 인천지법 2019고합6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방지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 죄질나쁨 범행 인정, 반성, 합의, 전과 없음	유
- 서울고법 2012노1268 - 수원지법 2011고합65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성폭력치료수강명령 2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진학·진로에 관한 영향력 과시 죄질불량, 합의 없음 반성, 초범, 일부공탁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	무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대전고법 2019노171 - 대전지법 2018고합47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 죄질 가볍지 않음 피해자의 운동 포기, 용서 없음 반성, 지인들의 선처 호소 역도 그만두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점	무
- 서울고법 2018노235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고합115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6세 여아를 상대로 추행 범행 일부 부인, 강력한 처벌 원함 초범,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중	무
- 서울고법 2018노2429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8 고합33		장기징역 2년, 단기징역 1년6월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운동부 선배의 지위 이용 죄질 매우 좋지 않음, 반성 없음, 책임 전가 ∴ 소년임에도 소년부 송치 부적절, 실형 선고 불가피(이상 1심 양형 사유) 죄질 매우 좋지 않음, 엄벌 탄원 피고인도 범행당시 14세, 현재도 소년인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감독·코치의 선처 탄원(이상 2심 양형 사유)	무
- 대법원 2018도14186, 2018전도96(병합) - 서울고법(춘천) 2018노 49, 전노5(병합) - 춘천지법 2017고합98, 123(병합)		징역 7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휴대전화 카메라기능 이용 기습 및 영당이 촬영, 죄질나쁨 피해회복 안됨, 피해자들의 부모들의 엄벌 탄원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 악한 점, 당시 13세 이상인 일부 피해자들과 정식교제 자백, 반성, 초범	무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대구지법 2018고합578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 어린 나이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합의, 초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유
- 대구고법 2019노167 - 대구지법 2018고합46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처벌 원함, 죄질·범정 가벌지 않음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추행 행위 외에 폭행·협박 등 유형력 행사 없음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 전과 없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무
- 대법원 2019도4908 - 서울고법(춘천) 2018노 133, 2018전노9(병합) - 춘천지법 2018고합33	피해자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위치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범행경위·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쁨 처벌 원함 범행 일체 부인, 반성 없음	무
- 서울고법 2017노3123 - 수원지법안양지원 2017 고합104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반성, 초범, 합의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유
- 부산고법 2017노764, 2017전노54(병합) - 울산지법 2017고합271, 2017전고34(병합)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범행 인정, 반성, 벌금형(절도죄) 이외 전과 없음	불상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인천지법 2018고단716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별다른 죄의식 없이 미성년자를 포함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추행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임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음, 전과 없음	유
- 대법원 2013도9129, 2013전도187(병합) - 서울고법 2013노365, 2013전노32(병합) -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 895, 2012전고15(병합)	대학교 태권도학과 진학 추천을 비롯한 태권도계에서의 인맥과 영향력 행사	징역 8년 7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 부과 1.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매일 22: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삼가 2. 전자장치부착기간중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접근 금지 3. 전자장치부착기간중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형(상해죄) 이외 전과 없음 처와 어린 두 자녀 부양해야 하는 점 가족과 다른 관원들의 선처 탄원 장래 태권도 선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 이용한 지속적인 추행과 간음 ∴ 죄질나쁨 범행 부인, 책임 전가, 죄의식 전무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의 엄벌 요구	무
- 대전지법논산지원 2018 고합60	체벌·폭언 우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 기회를 이용한 범행 수법 매우 불량 추행·학대 정도 가볍지 않음 범행 인정, 합의, 초범	유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대전지법 2017노201 - 대전지법공주지원 2016 고합35		징역3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 범행 인정, 반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벌금형(3회) 외 전과 없음, 연금 급여 제한의 불이익	불상
- 광주지법 2016고합193		징역 1년8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교사인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범행 ∴ 죄질 매우 나쁨 자백, 초범, 처벌 불원	유
- 대전지법 2012고합711		벌금 1,0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교사의 제자에 대한 반복적 추행 ∴ 죄질 나쁨 처벌 원함 초범, 유형력의 행사 및 정도 약함	무
- 대구지법 2009고합171, 2009전고3(병합)		징역 10년 압수된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키보드 1개, 캠코더 1개, 휴대전화(싸이언) 1개, 서류철 1권, 사진첩 1권, 편지 4장, 성적표 3장, 휴대폰(흰색) 1개, 8미리캠코더 테이프 1개 몰수 5년간 열람정보 제공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관원들을 보호해야할 지위 이용, 장기간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반복적으로 유린,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수법 동종전과 없음, 반성	불상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1.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명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 2. 피부착명명 청구자의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군·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 공원 등 아동놀이시설에 출입 금지 3.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서울고법 2018노788 - 인천지법부천지원 2017고합228		징역 2년6월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계획적 범행,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 이용, 피해자의 충격 피해 회복 조치 없음 반성, 미수에 그침	불상
- 수원지법 2011고합569, 2011전고33(병합)	프로팀 중학교 진학 후원, 가정형편 어려운 피해자에게 매달 용돈 지급 등 상당한 영향력 행사	징역 9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6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가족(모친 사망, 부친 알콜중독)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장기간 위력으로 간음·추행 ∴ 죄질 불량 동종 전과(강간치상죄 등) 있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점, 자백, 반성	무
- 춘천지법원주지원 2013고합41		징역4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세 여아의 가슴과 복부를 만지고 자위장면을 보여주는 등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나 그 부모가 더욱 안심하였을 초등학교 내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음주운전) 외 전과 없음	무
- 청주지법 2018고합86	학교생활 및 운동활동 불이익 우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코치로서의 학생 보호 책무 저버림 반성, 초범, 합의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유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서울고법 2016노793 - 인천지법 2015고합760	육상부가 잘 형성된 중학교 진학 영향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코치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망각 초범, 반성, 합의, 초등학교에서 해직된 점, 5년간 육상지도자 자격 정지 처분 받은 점	유
- 대전고법 2013노263 - 대전지법 2013고합31	오랜 기간 믿고 따르던 제자의 인적신뢰관계 이용	징역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처벌 원함, 교육자로서의 본분 망각, 죄질 불량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미수에 그친 점	무
- 대구고법 2016노400 - 대구지법 2016고합92		벌금 2,500만원 벌금 2,000만원 각 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선배로서의 우월한 지위 이용 지속적 괴롭힘 범행 당시 소년, 초범, 반성, 합의 가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다른 가해자들도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 청소년국가대표경력 등 성장 가능성 대한체육회로부터 1년6개월 간의 선수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유
- 대법원 2016도6650 - 대전고법 2015노558 (환송전) - 대전고법 2016노306 - 대전지법 2014고합462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자의 지위 이용 성적 욕망 충족 ∴ 죄질 매우 나쁨 반성 없음, 처벌 원함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매우 중한 추행 행위로 나아가진 않은 점	무
- 창원지법 2018고단506		벌금 300만원	반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음주운전(2회) 이외 전과 없음	유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대구고법 2016노559 - 대구지법 2016고합122, 2016전고15(병합)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보호시설(학교) 종사자의 범행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 교사직 상실, 30년 이상 성실하게 교사로 근무한 점 직장 동료, 제자, 지인들의 선처 탄원, 연금급여 제한의불 이익	유
- 대법원 2018도11762 - 부산지법 20171547 - 부산지법 2016고단7694		벌금 2,0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교사의 학생에 대한 범행 ∴ 비난 가능성 높음 성희롱 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음, 동종 범행 전과 없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 아동 12명 중 1명 제외한 전원의 처벌 불원	유
- 인천지법 2008고합633		징역 6년	피해자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을 정도인 피고인에 대한 신뢰 관계 피해 배상 전무, 전과 수회 있음	무
- 대구고법 2017노537 - 대구지법 2017고합238, 2017초기9389(병합)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영향력 가진 듯 행사, 코치 채용에 직접적인 도움	징역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감 범행 인정, 초범, 합의,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	유
- 광주지법 2017고합16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교사로서의 학생 보호책무 저버림 ∴ 죄질 중함 3인의 피해자 중 1인과의 합의만 있음 자백, 성폭력 전과 없음	유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광주고법 2017노288 - 광주지법 2017고합84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피해자는 만성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심각한 고통을 받음 범행 부인, 피해 회복 조치 안 함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불상
- 광주고법 2017노355 - 광주지법 2017고합33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다른 배구부원들로부터 따돌림, 전학, 배구 포기 배구부 해체 위협하며 사건 은폐 시도	무
- 서울고법 2017노1561 - 수원지법 2017고합10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감 범행 인정, 초범, 합의,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	유
- 수원지법 2017노5506 - 수원지법 2016고단6344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농구부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점 ∴ 죄질 좋지 않음 동종전과나 벌금형(3회)을 넘는 전과 없음	무
- 대구지법상주지원 2016 고합45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해자들은 모두 남자 청소년들로서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유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광주고법 2016노389 - 광주지법순천지원 2016 고합120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우월한 지위 이용, 교사의 본분 망각 체지방측정기회를 악용하여 교묘하게 추행 ∴ 죄질 불량 범행 부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안함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님	무
- 광주고법(전주) 2016노 119 - 전주지법 2015고합199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감독의무 있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 합의 없음, 피해 회복 조치 안 함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무
- 수원지법안산지원 2016 고합19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범행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유
- 대전고법 2015노348 - 대전지법 2014고합296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초범, 합계 2,300만원 공탁,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며 자살한 점	무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부산고법 2019노119 - 부산지법 2018고합534		벌금 1,0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아동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2년간 취업 제한 명령	교사의 지위에서 체육수업을 빙자하여 반복적 추행 교사 직위 해제됨, 정직 처분받아 더이상 출근 안 함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유
- 춘천지법강릉지원 2015노647 - 춘천지법강릉지원 2015고단546	제자들의 진로, 취업 관련 추천할 수 있는 위치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 ∴ 죄질 불량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초범	불상
- 대전고법 2016노31 - 대전지법서산지원 2015고합103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중학교 역도부 후배를 상대로 1년간 4차례 유사성행위 ∴ 죄질 나쁨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절도죄 등 소년보호 처분받아 소년원 재원 중 실형의 선고 불가피	무
- 서울고법 2015노1836 - 수원지법 2014고합600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에 감독의 의견 반영	벌금 2,0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동종 전과 없음, 합의	유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4고합20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인 점 샤워하는 모습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 죄질 불량 전과 없음, 상당한 금액 공탁, 반성	무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광주지법순천지원 2014 고합7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강제추행 ∴ 죄질 불량 초범, 합의	유
- 서울고법(춘천) 2014노 124 - 춘천지법 2013고합122, 2013전고13(병합)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의 범행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숙소로 유인하여 저지른 범행은 우발적으로 볼 수 없음 실형 전과 없음, 합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	유
- 서울고법 2014노2704 - 수원지법 2013고합523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에서 어린 관원을 수차례 추행 ∴ 죄질 나쁨 처벌 원함, 피해회복 조치 없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무
- 서울고법 2013노2936 - 인천지법 2013고합239		벌금 500만원 벌금 700만원 각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선수활동을 함께하는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쉽게 저항하지 못할 위치에 있음을 이용 ∴ 죄질 매우 불량 도망가는 피해자를 옥상까지 쫓아가서 거둬 추행 초범, 합의, 실업팀이 해체되어 선수 생활을 그만둔 점	유
- 부산고법 2013노240 - 부산지법 2013고합122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동종 전과나 벌금형(음주운전)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유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대구지법 2012고합1165, 2012전고17(병합)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죄질 불량 합의, 자백, 벌금형(2회) 이외 전과 없음	유
- 청주지법충주지원 2018 고합31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훈련 과정에서 가혹한 체벌, 훈육을 빌미로 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 죄질 매우 불량 범행 부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안함 초범이지만 징역형의 선고 불가피	불상
- 부산고법(창원) 2018노 277 - 창원지법 2017고합289		벌금 1,0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고등학교 교사가 근무시간 중인 수업시간 중에 학생을 추행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를 갖고 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선처 호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상
- 대법원 2015도3095, 2015전도47 - 서울고법 2016노2768, 2016전노192(고합) (과기환송심) - 서울고법 2014노3287, 2014전노355(병합)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4 고합190, 2014전고12 (병합)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초등학교 내에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함 이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초범, 반성, 합의	유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68, 2015전고14(병합)		징역 8년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개인 골프강사의 지위를 이용, 약한 추행에서부터 조금씩 추행의 정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결국 간음에 이룸 ∴ 죄질 매우 무거움 국의 출국 후 국외에서 체포됨, 반성 안함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측에 3,000만원 지급한 점	불상
- 울산지법 2018고합23		징역 5년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감 간음 행위 중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퍼트린다고 협박 ∴ 죄질 불량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닌 점	무
- 대구지법 2017고합390, 2017보고8(병합)		징역 6년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3년간 보호관찰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태권도 도장의 제자여던 아동·청소년 대상 ∴ 죄질이 아주 불량 합의 없음	무
- 광주지법순천지법 2017고합250		징역 10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인적 신뢰 관계 이용 12세에 불과한 자신의 제자를 수심회에 걸쳐 추행, 유사성행위 ∴ 죄질 매우 나쁨 반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불상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서울고법 2018노2222 -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 고합53		징역 1년10개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및 사실상 노무제공 제한 명령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반성, 초범, 합의, 다수의 양궁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선처 탄원	유
- 대전고법 2018노527 - 대전지법서산지원 2018 고합30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 1회의 체육수업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 이 사건 이후 전교생 대상 익명 성폭력실태조사 결과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관련 구체적인 정황 찾을 수 없음 학생들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피고인의 교육 철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불상
- 창원지법 2018고합234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도 포함)명령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매각하고 이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노력 초범, 처와 갓난 아들을 부양	무
- 대전지법 2017고합25, 2017전고10(병합)		징역 6년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4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음주를 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회의 형사 처벌 받은 전력	무



사건번호	위력의 행사 내용	양형	양형 사유	합의(처벌불원) 유무
- 부산지법 2014고합604, 2014전고37(병합)		벌금 40,000,000 벌금 3,00,000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축구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축구부 학생들 및 그 어머니들을 강제추행	불상
- 대법원 2019도9323 - 서울동부지법 2019노179 -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 3728		징역 1년8개월 40 시간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불상

<부록 5>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

<부표 4>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일반적 사항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대법원 2018도14220 - 청주지법 2018노2 - 청주지법 2017고단471	야구	남	불상	고등학교 야구부원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16, 17, 16	불상	3	운동장 20:10경
- 대법원 2016도7434 - 대구지법 2015노500	핸드볼	여	불상	중학교 핸드볼 선수	중학교 핸드볼 코치	15, 16, 16, 16	불상	4	체육관, 모텔 객실 창고, 강당
- 대법원 2015도2561 - 인천지법 2014노4117 - 인천지법 2013고단6503, 2014고단2300(병합)	태권도	남	불상	고등학교 태권도부원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17	불상	2	체육관, 시간 불상 09:00경
- 부산지법 2016고단455, 7811(병합)	배구	여	불상	중·고교 배구부 선수	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17, 16, 15	불상	3	체육관 15:00-19:00, 09:00~11:00
- 울산지법 2018고정753	수영	여	불상	수강생	B시설 수영장 강사	7	불상	1	B시설 수영장 17:16
- 서울고법 2012노1268 - 수원지법 2011고합658	축구	여	남	축구부원의 어머니, 축구부원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50, 불상, 17	47	3	감독 숙소, 학교 정문 앞길 모텔객실
- 의정부지법고양지원 2013 고단1084	불상	불상	불상	소속 운동부원	학교 감독, 코치	16	불상	1	피고인의 방 13:00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대구고법 2016노400 - 대구지법 2016고합92	사이클	남	남	고등학교 사이클부 후배	고등학교 사이클부 선배	15	2학년, 3학년	2	고등학교 기숙사 방, 기숙사 샤워실, 모텔 객실, 학교 사이클부실 저녁경~04:00
- 대구지법 2011고정1830	불상	불상	불상	중학생	중학교 체육교사	16	불상	1	학교 체육실
- 수원지법 2011고단3472	태권도	불상	남	대학교 태권도학과 후배	대학교 태권도학과 선배	22, 21, 20	25, 25, 24, 24	23	학교 부근 야산 22:00경
- 광주지법순천지원 2018 고정239	우슈	남	불상	고등학교 우슈부 학생	우슈 체육관 관장 겸 고등학교 우슈팀 코치	17	불상	1	체육관
- 청주지법 2018노1061 - 청주지법영동지원 2017 고단106	정구	여	불상	중학교 정구부 선수	중학교 정구부 코치	15	불상	2	정구장, 숙소
- 전주지법 2018노1294 - 전주지법 2018고단148	피구	불상	불상	중학교 학생	중학교 계약직 피구강사	12, 12, 13, 13	불상	4	강당 13:30~14:30
- 수원지법 2018노8334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8 고단2306	태권도	불상	불상	수강생	태권도 체육관 운영자	9	불상	1	체육관, 19:20
- 대전지법 2018노357 - 대전지법 2017고단2911	투척	여	불상	소속 학교 학생	중고등학교 투척부 코치	16	불상	1	학교 실내연습장, 농구장, 웨이트장, 전천후경기장 10:00~17:30
-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 638	유도	여	불상	중학교 유도부원	중학교 유도부 코치	14	불상	1	체육관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의정부지법 2017고단 5740	야구	불상	불상	야구부 소속 학생	고등학교 야구부 투수코치	17, 16, 15, 17, 18	불상	5	운동장, 트레이닝실
- 서울중앙지법 2017노 2821 -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 2896	럭비	남	불상	체육교육학과 신입생이자 럭비부 후배	대학교 럭비부 선배	22	불상	1	주점
- 청주지법 2017고단2833	태권도	불상	불상	태권도부 학생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14, 15, 15, 14, 14, 13, 15	불상	7	중학교 (훈련하는 과정)
- 부산지법 2017고단5579	배구	불상	불상	배구부원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	11, 12	불상	2	강당, 시합장 락커룸
-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 161	수영	불상	불상	수영선수 지망생으로 추정 '기록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를 포기'	수영코치	13	불상	1	다수 지역 실내수영장 및 수영장 창고 06:30~19:30
- 서울고법 2017노1653 - 서울북부지법 2017고합 103	핸드볼	불상	불상	핸드볼팀 선수	학교 핸드볼팀 코치	17, 17, 17, 16, 16, 15	불상	6	체육관 1층 헬스장 마루교실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6 고단678	기계 체조	여, 불상	불상	기계체조부원	초등학교 기계체조부 코치	11, 9, 11, 10	불상	4	초등학교 체육관 사무실, 체육관 중학교 체조 경기장 09:00~저녁경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고단1670	야구	불상	불상	야구부원	중학교 야구부 코치	13~15	불상	12	중학교 야구부 숙소 밖 공터
- 수원지법 2016고단4641	농구	불상	불상	대학교 농구부 소속 후배선수	대학교 농구부 소속 선배선수	19, 19, 19, 20, 18	불상	5	대학교 체육관, 콘도 객실
- 창원지법 2018노2957 - 창원지법밀양지원 2018고정103	배드민턴	불상	불상	배드민턴부 소속 선수	B학교 체육교사 겸 배드민턴 부감독	18	불상	1	B학교 사무실
- 서울지법 97노4009 - 서울남부지법 96고단4597	체육 필기시험 접수불량	남	불상	중학교 학생	중학교 체육교사	14	불상	1	교실 복도
- 울산지법 2016노328 - 울산지법 2015고단1315	수영	여, 불상	여	초등학교 수영부 소속 학생	초등학교 수영 코치	10, 12	불상	2	초등학교 수영장 체력단련실
- 수원지법 2015노6522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5고단1618	축구	불상	불상	선수	축구팀 감독	18	불상	1	피고인의 숙소 휴게실
- 수원지법 2018노6100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8고단1630	빙상	남녀	남	빙상 선수	초·중·고교 선수 지도 및 국가대표팀 코치	15, 18, 17, 21	불상	4	아이스링크 탈의실 아이스링크지도자대기실 리조트객실 빙상훈련장여자선수대기실 06:00~17:00
- 대전지법 2018노897 - 대전지법 2018고단403	태권도	불상	불상	태권도장의 원생	태권도장 사범	9	불상	1	체육관 탈의실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대법원 2013도8599 - 대전지법 2012노2750 - 대전지법공주지원 2012 고단55	야구	불상	불상	야구부원	중학교 야구부 감독	13	불상	1	중학교 야구실내연습장
- 수원지법 2015노7611 - 수원지법안양지원 2015 고정231	피겨 스케이팅	여	불상	피겨스케이팅 선수	피겨스케이팅 개인 강사	13	불상	1	빙상장
-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 3306	핸드볼	여	불상	B여중 핸드볼팀 부원	B여고 핸드볼 코치	15	불상	불상	B여고 웨이트장 16:00
- 대전지법 2018고단1530	쇼트 트랙	불상	불상	수강생	쇼트트랙 강사	10	불상	불상	선수대기실 07:00
- 인천지법 2016노739 - 인천지법 2014고단1633	여성마비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특수경기	남녀	불상	해당 종목 국가대표	장애인학교 체육교사 겸 해당 종목 대표팀 감독	30, 37, 24	불상	3	체육관
- 광주지법 2016노1111 - 광주지법해남지원 2015 고단550	탁구	불상	불상	F학교 탁구부 학생	군체육회 일반생활체육 지도사겸 F학교 탁구부 강사, 학교운동지도자로 고용된탁구부강사	10, 9, 9, 9, 9	불상	5	F학교 탁구장
- 대전고법 2019노171 - 대전지법 2018고합473	역도	여	남	역도부 소속 선수	고등학교 역도부 코치	16	불상	1	학교 역도장, 여자숙소 22:00,15:30



사건번호	종목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피해자 수	피해 장소 및 시간
- 대법원 2013도9129, 2013전도187(병합) - 서울고법 2013노365, 2013전노32(병합) -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 895, 2012전고15(병합)	태권도	여	남	태권도장 관원	태권도 관장	초등 6학년~ 대학생 되기까지	피해자와 나이 차이 20살	1	태권도장의 사무실

<부표 5>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피해 유형

사건번호	상해	중상해	폭행	과실치상	모욕	공갈	강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방실 침입)	학대	상습상해	집단적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 대법원 2018도14220 - 청주지법 2018노2 - 청주지법 2017고단471	○		○													
- 대법원 2016도7434 - 대구지법 2015노500			○													
- 대법원 2015도2561 - 인천지법 2014노4117 - 인천지법 2013고단6503, 2014고단2300(병합)	○		○													○
- 부산지법 2016고단455, 7811(병합)												○				
- 울산지법 2018고정753																○
- 서울고법 2012노1268 - 수원지법 2011고합658						○										
- 의정부지법고양지원 2013 고단1084													○		○	
- 대구고법 2016노400 - 대구지법 2016고합92	○		○				○	○					○			
- 대구지법 2011고정1830	○															
- 수원지법 2011고단3472			○										○			

사건번호	상해	중상해	폭행	과실치상	모욕	공갈	강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방실 침입)	학대	상습상해	집단적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 161																○
- 서울고법 2017노1653 - 서울북부지법 2017고합 103		○														○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6 고단678			○											○		○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고단1670															○	○
- 수원지법 2016고단4641			○				○							○		
- 창원지법 2018노2957 - 창원지법밀양지원 2018 고정103	○															
- 서울지법 97노4009 - 서울남부지법 96고단 4597	○															
- 울산지법 2016노328 - 울산지법 2015고단1315																○
- 수원지법 2015노6522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5 고단1618			○												○	



사건번호	상해	중상해	폭행	과실치상	모욕	공갈	강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방실 침입)	학대	상습상해	집단적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 수원지법 2018노6100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8 고단1630									○			○				
- 대전지법 2018노897 - 대전지법 2018고단403																○
- 대법원 2013도8599 - 대전지법 2012노2750 - 대전지법공주지원 2012 고단55			○													
- 수원지법 2015노7611 - 수원지법안양지원 2015 고정231				○												
-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 3306			○													
- 대전지법 2018고단1530															○	○
- 인천지법 2016노739 - 인천지법 2014고단1633			○			○					○					
- 광주지법 2016노1111 - 광주지법해남지원 2015 고단550																○
- 대전고법 2019노171 - 대전지법 2018고합473			○							○						

사건번호	상해	중상해	폭행	과실치상	모욕	공갈	강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방실 침입)	학대	상습상해	집단적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2013도9129, 2013전도187(병합) - 서울고법 2013노365, 2013전노32(병합) -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895, 2012전고15(병합) 															○	



<부표 6>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가해 행태 및 양형 관련

사건번호	폭행 도구	폭행 횟수	양형	양형 사유	합의 (처벌불원) 유무
- 대법원 2018도14220 - 청주지법 2018노2 - 청주지법 2017고단471	부러진 야구방망이 (길이 30cm)	수회	벌금 300만원	죄질 나쁨, 범행부인, 공탁	무
- 대법원 2016도7434 - 대구지법 2015노500	핸드볼 공, 손, 발, 물에 적신 수건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	수회	공소기각 ∴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		유
- 대법원 2015도2561 - 인천지법 2014노4117 - 인천지법 2013고단6503, 2014고단2300(병합)	나무 몽둥이 (길이 50~60cm), 손바닥	약 20여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폭력 전과 반성, 태권도부 해체, 사직	유
- 부산지법 2016고단455, 7811(병합)	손바닥, 발, 밀대자루, 배구공	각 10~20여회, 총 18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아동학대예방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배구부 훈련 과정에서만 이루어진 체벌 지도자의 길 포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불상
- 울산지법 2018고정753	손 (일명 '꿀밤')	10회 가량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	훈육의 일환이었다는 점만 강조하는 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훈육을 위한 목적	불상
- 서울고법 2012노1268 - 수원지법 2011고합658	불상	불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2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진학·진로에 관한 영향력 과시 죄질불량, 합의 없음 반성, 초범, 일부공탁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	무

사건번호	폭행 도구	폭행 횟수	양형	양형 사유	합의 (처벌불원) 유무
- 의정부지법고양지원 2013고단1084	나무 몽둥이 (길이 60~70cm, 굵기 지름 3~4cm)	20회 가량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상
- 대구고법 2016노400 - 대구지법 2016고합92	손 스프레이형 파스 분사 후라이팬	총 14회 총 6회	벌금 2,500만원 벌금 2,000만원 각 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선배로서의 우월한 지위 이용 지속적 괴롭힘 범행 당시 소년, 초범, 반성, 합의 가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다른 가해자들도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 청소년 국가대표 경력 등 성장 가능성 대한체육회로부터 1년6개월 간의 선수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유
- 대구지법 2011고정1830	손, 주먹, 오른발	7회	벌금 100만원	교육 목적의 행위 한도 초과	불상
- 수원지법 2011고단3472	각목	각각 5회 내지 10회 각각 2회내지 5회	각 벌금 700만원, 각 벌금 500만원 각 형의 선고유예	시범 행사 중 사고 예방 목적 속칭 '정식교육'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전과 없음, 반성	유
- 광주지법순천지원 2018고정239	운동화	약 10회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유예	합의, 반성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유
- 청주지법 2018노1061 - 청주지법영동지원 2017고단106	발, 슬리퍼, 정구라켓	5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죄질 무거움,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엄한 훈육 의도, 동종 범죄 전과 없음 이중 범죄 벌금형 이후 약 10년간 전과 없음	무



사건번호	폭행 도구	폭행 횟수	양형	양형 사유	합의 (처벌불원) 유무
- 전주지법 2018노1294 - 전주지법 2018고단148	손	불상	무죄	아동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수업태도 불량한 상황 훈계 목적 일회적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	불상
- 수원지법 2018노8334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8고단2306	발	3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8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죄질 나쁨, 합의 없음 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무
- 대전지법 2018노357 - 대전지법 2017고단2911	빗자루, 나뭇가지(길이 50cm) 휴대전화 모서리, 차량 키 모서리, 플라스틱봉(길이1m)	수십 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수강명령	범행 일부 부인, 피해 아동에게 책임 전가 반성 없음, 용서 없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아동의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문제의식 없이 범행에 이른 점	무
-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 638	뉘시대(길이 30cm)	수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죄질 나쁨, 합의 없음 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점	무

사건번호	폭행 도구	폭행 횟수	양형	양형 사유	합의 (처벌불원) 유무
- 의정부지법 2017고단 5740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 발, 주먹	수십 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 명령	자백,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의 선처 탄원 이중 범죄 벌금형 이후 약 10년간 전과 없음	유
- 서울중앙지법 2017노 2821 -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 2896	주먹	수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유예	피해자의 명예·평판 훼손된 점 전과 없음, 반성, 합의, 신체적인 피해 회복	유
- 청주지법 2017고단2833	하키채, 걸레자루 (이상 '위험한물건'으로 공정)	각 수차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인정, 반성, 합의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선처 탄원 교육자로서 오랜 기간 책임감 있는 지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유
- 부산지법 2017고단5579	야구방망이	각 수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	죄책 가법지 않음 합의, 동종 범죄 전과 없음	유
-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 161	오리발, 발, 나무막대기	각 수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죄질 불량, 반성	불상
- 서울고법 2017노1653 - 서울북부지법 2017고합 103	발	각 수회	징역 3년 6월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해(의식불명) 극심, 죄질 불량 합의(의식불명 피해자는 제외) 범행 인정, 뉘우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전과 없음, 치료비 일부 부담	유



사건번호	폭행 도구	폭행 횟수	양형	양형 사유	합의 (처벌불원) 유무
- 수원지법평택지원 2016 고단678	몽둥이(길이 약 50cm) 하키스틱(길이약1m) (이상 '위험한 물건'으로 공정)	불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교육현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범행 전면 부인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아동복지법의 취지상 형의 감경요소로서 제한적으로만 공정), 전과 없음, 퇴직 학교장들과 일부 학부모들의 묵인 하의 체육교육현장의 체벌 관행(구조적인 원인)	유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고단1670	나무 야구방망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주먹, 발	각 수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죄질 좋지 않음 범행 시인, 반성, 초범, 합의	유
- 수원지법 2016고단4641	가위, 가위 날, 쇠파이프(길이 약 60cm) (이상 '위험한 물건'으로 공정) BB탄 장난감 총 BB탄 발사, 운동화 발, 주먹, 부항 칩	불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죄질 좋지 않음, 합의 없음, 피해 회복 전혀 안 됨 전과 없음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무
- 창원지법 2018노2957 - 창원지법밀양지원 2018 고정103	줄이 없는 배드민턴 채, 발 배드민턴 공 보관 상자	수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유예	전과 없음, 반성, 협회 감독직 제명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근 처벌 전력 없이 30년간 성실히 교직 종사	유

사건번호	폭행 도구	폭행 횟수	양형	양형 사유	합의 (처벌불원) 유무
- 서울지법 97노4009 - 서울남부지법 96고단 4597	아이스하키채 손잡이 부분	2회	무죄	체벌행위와 피해자의 추간관 탈출증상 간의 인과 관계 부정 교육적인 견지에서 허용되는 체벌 행위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음	불상
- 울산지법 2016노328 - 울산지법 2015고단1315	나무막대기 (길이 30cm, 두께 1.5cm)	각각 '약 80대, 약 35대' 라고 주장	무죄	피고인은 혼욕 목적으로 발바닥을 1~2대 때린 사실만 일관하여 진술,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교습생들의 진술	불상
- 수원지법 2015노6522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5 고단1618	플라스틱 훈련봉(길이 75cm, 굵기 2cm) (이상 '위험한 물건'으로 공정) 손, 이발기	23대 이상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죄질 좋지 않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반성, 선수의 생활지도로 폭행, 300만원 공탁, 동종 전과 없음	무
- 수원지법 2018노6100 - 수원지법성남지원 2018 고단1630	주먹, 발, 블록 스케이트날 조립용 쇠 나사, 모자	불상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범행 시기에는 대한체육회의 폭력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등 폭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자백, 반성, 피해자 1인과 합의 빙상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된 점 많은 선수나 지도자들의 선처 탄원 손괴한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의 지도 노력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점(이상 1심 양형 사유)	유



사건번호	폭행 도구	폭행 횟수	양형	양형 사유	합의 (처벌불원) 유무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한 집요한 합의 중용 ∴ 피해자 J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하지 않음 선수들의 인권 보호, 향후 폭력사태 재발 방지(이상 2심 양형 사유)	
- 대전지법 2018노897 - 대전지법 2018고단403	나무막대기(길이 70cm) (‘위험한물건’으로공정)	1회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범행 인정, 반성, 합의, 초범 피해 아동의 모친에게 300만원 지급	유
- 대법원 2013도8599 - 대전지법 2012노2750 - 대전지법공주지원 2012 고단55	대나무 빗자루 손잡이	1회	벌금 100만원	전과 없음, 피해자가 연습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1회 폭행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불상
- 수원지법 2015노7611 - 수원지법안양지원 2015 고정231		불상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유예	만12세인 초등학생이 부상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점 수강생의 자세 교정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전과 없음, 자백, 반성 200만원 공탁, 민사조정 성립	불상
-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 3306	막대기(길이 약 50cm)	수회	벌금 500만원	전과 없음, 죄책이 무겁지 않음 훈련 집중 의도 범행 부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2차 피해 가함	불상

사건번호	폭행 도구	폭행 횟수	양형	양형 사유	합의 (처벌불원) 유무
- 대전지법 2018고단1530	하키 스틱	수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수강명령	나이 어린 아동에게 과도한 유형력 행사 용서 없음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년간 병상 코치직 자격정지 처분받은 점	무
- 인천지법 2016노739 - 인천지법 2014고단1633	주먹, 콤파스, 발 나무로 제작한 심판표지판	불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갈 범행의 피해 금액 일부 반환 국제 대회 성과 등 체육계에 기여 교사자격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부인, 폭행·학대 부분 피해회복 노력 안 함	불상
- 광주지법 2016노1111 - 광주지법해남지원 2015 고단550	발, 연습용 라켓	수십 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벌금 300만원	죄질 좋지 않음 탁구 교육을 위해 노력함, 동종 범죄 전과 없음	유
- 대전고법 2019노171 - 대전지법 2018고합473	발	각 1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죄질 가볍지 않음, 피해자의 운동 포기 용서 없음 반성, 지인들의 선처 호소 역도 그만두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점	무
- 대법원 2013도9129, 2013전도187(병합) - 서울고법 2013노365, 2013전노32(병합) -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 895, 2012전고15(병합)	청테이프를 감은 각목	수회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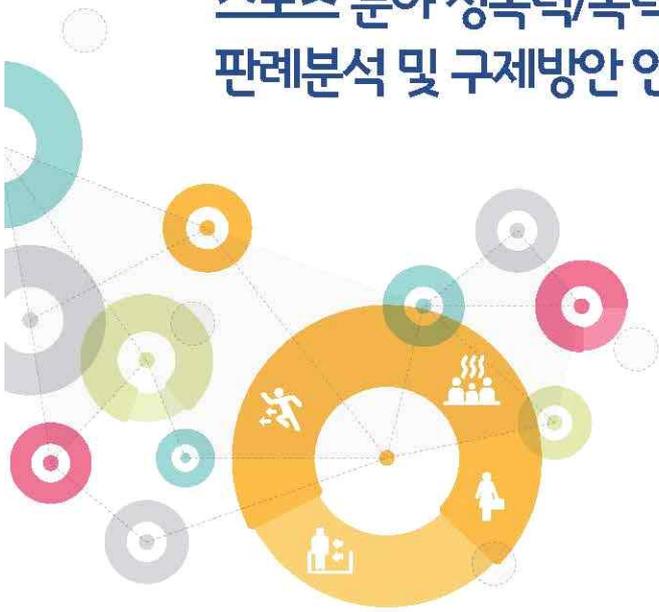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관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 인쇄일 | 2019년 10월 29일
| 발행일 | 2019년 10월 31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02)2125-9963
| F A X | 02)2125-0934
|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ISBN: 978-89-6114-720-0 93330 비매품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Tel. (02)2125-9963 Fax. (02)2125-0934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720-0 93330